

中小企業 金融支援을 위한
信用保證制度的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通信·運送技術의 발달과 더불어 世界市場이 급속히 통합되고 企業間 競爭이 격화됨에 따라 급격한 市場環境 變化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中小企業의 重要性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金融自律化 및 開放幅의 擴大, WTO 체제의 출범 등은 中小企業에 대한 기존의 直接的인 租稅·金融支援方式에는 限界가 있음을 뜻하게 되고 中小企業 育成을 위해서 새로운 接近方式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資金의 可用性(availability)을 높여주는 信用保證制度는 그 役割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信用保證制度는 그 동안 급속한 量的 成長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中小企業의 不渡 증가와 더불어 代位辨濟가 急増함에 따라 資金 부족으로 資金의 보증여력이 거의 한계상태에 이르렀고 그 동안 信用保證制度 運用上의 問題點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信用保證制度는 유망 중소기업이 資金부족으로 金融기관으로부터 資金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적절한 信用평가를 바탕으로 한 信用保證에 의하여 金融기관에 대한 資金接近度를 높이고 이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全額보증에 따른 金融機關의 道德的 解弛, 높은 代位辨濟率로 인한 보증여력의 소진, 信用보증업무에 대한 지나친 정책적 개입, 보증업무의 경직적인 운용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本 政策報告書는 현재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을 분석하고 격변하는 國內外 經濟環境下에서 信用保證制度의 中·長期的인 改善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本 政策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趙潤濟 博士와 黃鉉理 主任研究員의 공동집필로 완성되었다. 著者들은 연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협조 해주신 信用保證基金의 安恭嫻 理事長과 趙顯峻 部長, 그리고 유익한 助

음을 해주신 KDI의 姜文秀 博士와 本 研究院의 安鍾吉 博士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1995年 3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I. 序 論	9
II. 信用保證制度的 現況	11
1. 信用保證制度的 發展過程	11
2. 信用保證制度的 構造	13
가. 財源調達	13
나. 信用保證의 節次	16
다. 信用保證의 對象	18
라.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의 優待措置	21
3. 信用保證制度的 運用現況	23
가. 信用保證 支援實績	23
나. 代位辨濟	29
다. 信用調査	30
III. 信用保證制度的 中小企業 金融擴大에 대한 效果	32
1. 信用保證制度和 中小企業金融의 擴大	32
2. 企業들의 입장에서 본 信用保證制度的 寄與度	35
IV. 現行 信用保證制度的 問題點 및 改善方向	40
1. 問題點	40
가. 높은 代位辨濟率과 保證支援 餘力の 萎縮	40

나. 全額保證制度에 따른 道德的 解弛	43
다. 基金造成을 위한 金融機關 出捐方式의 問題	44
라. 保證業務의 硬直的인 運營	44

2. 앞으로의 改善方向	46
가. 出捐金の 擴大 및 出捐方式의 再調整	46
나. 信用調査 · 評價機能의 提高 및 政策的 介入의 縮小	49
다. 部分保證制度의 導入과 道德的 解弛의 縮小	50
라. 保證料率의 現實化 및 差等化	52

參考文獻	58
-------------	----

〈附錄 1〉 信用保證制度에 관한 企業設問調査書	60
〈附錄 2〉 中小企業을 위한 主要國의 信用保證制度	65

表 目 次

〈表 II - 1〉信用保證運用 現況	11
〈表 II - 2〉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信用保證基金의 規模 比較 (1993年 末)	12
〈表 II - 3〉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 推移	14
〈表 II - 4〉信用保證機關의 基本財産 造成內譯 比較	15
〈表 II - 5〉債權銀行別 出捐 및 代位辨濟 現況	17
〈表 II - 6〉保證 種類別 保證實績	19
〈表 II - 7〉一般銀行 元貨貸出金의 擔保別 與信 構成比 (金額 基準)	20
〈表 II - 8〉預金銀行 中小企業貸出金의 擔保別 構成比	20
〈表 II - 9〉中小企業의 會社債 發行 實績	21
〈表 II - 10〉信用保證實績	24
〈表 II - 11〉企業規模別 保證支援比重 推移	25
〈表 II - 12〉金融機關의 貸出金 中 信用保證 活用度	26
〈表 II - 13〉業種別 保證 現況	26
〈表 II - 14〉金額別 保證 現況(1993年)	27
〈表 II - 15〉業體當·件當 平均 保證金額	28
〈表 II - 16〉企業規模別·業種別 業體當 平均 保證金額	28
〈表 II - 17〉保證期間別 業體數 및 保證金額 比重	29
〈表 II - 18〉信用保證基金의 代位辨濟 推移	30
〈表 II - 19〉韓國·日本·臺灣의 代位辨濟率 比較	30
〈表 II - 20〉信用調查 實績 推移	31
〈表 III - 1〉中小企業에 對한 銀行貸出 및 M2와 M3의 推移	33
〈表 III - 2〉預金銀行과 非銀行金融機關의 貸出金 推移	34
〈表 III - 3〉非銀行金融機關의 中小企業支援實績	35
〈表 III - 4〉中小製造業體의 信用保證利用度	36

〈表 Ⅲ－ 5〉 信用保證制度의 規模別 活用度	36
〈表 Ⅲ－ 6〉 企業規模別 資金調達에 대한 信用保證制度의 寄與度	37
〈表 Ⅲ－ 7〉 企業規模別 信用保證制度의 利用動機	37
〈表 Ⅲ－ 8〉 銀行貸出을 받기 어려운 要因	37
〈表 Ⅲ－ 9〉 企業規模別 貸出條件	38
〈表 Ⅲ－10〉 企業規模別 資金調達 代替手段	39
〈表 Ⅲ－11〉 企業規模別 信用保證貸出의 用途	39
〈表 Ⅳ－ 1〉 年度別 信用保證事故 및 正常化率 推移	41
〈表 Ⅳ－ 2〉 信用運用倍數 推移	43
〈表 Ⅳ－ 3〉 企業規模別 信用保證制度 利用의 隘路事項	45
〈表 Ⅳ－ 4〉 制度圈 中小企業 貸出市場의 金融機關別 比重 推移	48
〈表 Ⅳ－ 5〉 主要國의 保證比率 現況	51
〈表 Ⅳ－ 6〉 損益分岐點 水準의 保證料率 算出	54
〈表 Ⅳ－ 7〉 外國 保證機關의 保證料	55
〈表 Ⅳ－ 8〉 保證種類別 危險率(1993年 基準)	56

圖 目 次

[圖 Ⅱ－1] 信用保證制度의 基本構造	16
----------------------	----

I. 序 論

中小企業의 育成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년 간 經濟의 高度 成長過程에서 經濟力이 大企業에 集中됨에 따라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不均衡이 深化되었고 나아가서 經濟의 開放化·國際化 등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中小企業의 重要性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 조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經濟環境의 變化에 보다 彈力的이고 伸縮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經濟의 競爭力을 提高시키는 데에 필요한 製品生産技術의 向上을 위해서도 대기업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의 部品·素材 技術水準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기업에 의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中小企業의 열악한 環境은 대부분 市場의 不完全性(imperfect market), 나아가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政府가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학적 논거를 보아서도 타당하다. 市場失敗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直接的인 補助金, 金融에 대한 接近手段(access)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信用保證制度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擔保力을 補完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資金을 支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97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 中小企業의 金融 擴大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금리자유화의 확대,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화 등으로 政策金融金利가 自由化되고 금융지원제도의 補助金의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금융지원제도는 金利補助보다 可用性(availability) 위주의 支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信用保證의 役

割合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信用保證制度의 보다 效率的인 運用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信用保證制度는 運用上の 問題點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용보증제도는 유망 중소기업이 신용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적절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한 信用保證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접근도를 높여 가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대출금의 전액보증에 따른 金融機關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문제,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신용보증기관이 新規保證을 위해서 保證殘額을 계속 늘려가야 하는 문제, 그리고 높은 代位辨濟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金融機關의 一律的인 出捐料率에 의존하는 기금조성 등 여러가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을 信用保證基金의 운영실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¹⁾ 격변하는 國內外 經濟環境下에서 信用保證制度의 改善方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의 發展過程 및 運營現況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信用保證制度의 寄與度を 조사·분석하였다.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통계 및 자료는 신용보증기금의 협조로 얻었고 보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들이 따로 설문조사를 하였다²⁾. 제Ⅳ장에서는 현행 信用保證制度의 問題點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同 制度의 향후 改善方向을 모색하였다.

- 1) 우리나라는 현재 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信用保證基金 등 2개의 신용보증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信用保證制度의 運營現況 및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표본구성은 信用保證基金의 정보서비스(CRETOP)를 이용하여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이를 서울에 있는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規模別, 業種別로 1,000개의 설문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낸 후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23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3%의 응답률을 보였다.

II. 信用保證制度의 現況

1. 信用保證制度의 發展過程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1961년에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면서 도입된 信用保證準備金制度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中小企業 融資에 대한 貸損危險負擔을 경감시켜 주는 間接的인 信用補完制度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1967년에 中小企業信用保證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은행이 保證貸出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財源調達이 정부출연금과 보증수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보증료(보증액의 연 1.5%를 대출이자에 포함)만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1971년에 이르러서는 신용보증운용배수가 법적 상한배수인 10배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保證需要 增加에 따른 追加保證支援이 制度的으로 不可能하였다.

〈表 II - 1〉 信用保證運用 現況

(單位：百萬圓, 倍)

	기 본 재 산 (A)	보증부대출액 (B)	운 용 배 수 (B/A)
1967	428	2,514	5.9
1968	549	3,438	6.3
1969	693	5,937	8.6
1970	872	8,192	9.4
1971	1,030	9,848	9.6

資料：信用保證基金, 『信用保證基金 10年史』, 1986.

그 후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 의하여 信用保證制度의 대폭적인 擴大措置가 이루어졌다. 즉, 信用保證 受惠企業의 範圍를 종전의 중소

광업·제조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모든 기업으로 擴大하고 전 금융기관 내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基金造成을 위하여 政府(10억원)과 金融機關(대출금의 年率 5/1,000 상당액)이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신용보증제도는 이 같은 수 차례의 立法措置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1976년 6월에 비로소 현재의 信用保證基金이 독립된 신용보증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으로 그 동안 中小企業銀行이 대항하여 오던 신용보증업무를 독립적인 신용보증전담기관이 운영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의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한 技術開發의 重要性이 더욱 擴大되었다. 정부는 신기술사업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7년에 技術信用保證基金을 설립하였다³⁾. 처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영·관리를 대행하였으나 技術信用保證基金이 활성화되고 中小企業 保證支援의 量的 擴大, 서비스의 質的 改善 등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1989년에 이를 독립 法人化하였다. 이에 따라

〈表 Ⅱ-2〉 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信用保證基金의 規模 比較(1993年 末)

(單位: 億圓)

	출연금			기본재산	보증잔액	
	(누계)	정 부	금융기관		공급	
신 용 보 증 기 금	16,438	3,077	13,361	5,043	85,441	63,867
기술신용보증기금	5,577	1,870	3,707	2,502	21,767	18,162

資料: 技術信用保證基金, 『年次報告書』, 1993.

信用保證基金, 『年次報告書』, 1993.

3) 기술신용보증기금은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25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2개의 신용보증전담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2. 信用保證制度의 構造

가. 財源調達

신용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基本財産은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財産的 基礎로서 保證債務의 최종적인 擔保가 되는 동시에 보증활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代位辨濟 準備金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基金이 公信用을 가지고 信用保證을 安定的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保證增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基本財産의 增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기본재산의 증가 규모가 보증액의 증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表 II-3〉 참조)⁴⁾.

이는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어나 代位辨濟額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表 II-3〉에서와 같이 최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政府出捐金の 증가로 1993년 연중 출연금이 1991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의 급증으로 損失規模가 크게 늘어나 基本財産이 오히려 減少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基本財産은 信用保證基金法上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과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조성된 기본재산을 보면 政府和 金融機關의 出捐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表 II-3〉 참조). 企業의 경우에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규상

4) 1993년의 경우 年間 保證額의 純增加額이 1조 3천억원인 데 반하여 기본재산은 오히려 746억원 감소하였다.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의무조항이 들어 있지 않아 실제로 출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2금융권도 기금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에서 제2금융권을 금융기관으로 달리 지정하고 있지 않아 은행과 같이 신용보증의 수익자이면서도 출연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다⁵⁾.

〈表 II-3〉 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 推移

(單位: 億圓)

	1977	1981	1985	1987	1989	1991	1993	1994.6
출 연 금	141	208	861	1,312	1,201	1,310	2,568	3,077
정 부	-	-	83	200	220	50	900	2,200
금 용 기 관	141	208	778	1,112	981	1,260	1,668	877
(특 수 은 행) ¹⁾	(29)	(47)	(245)	(382)	(355)	(361)	(466)	(-)
(시 중 은 행) ¹⁾	(89)	(128)	(408)	(559)	(452)	(645)	(889)	(-)
(지 방 은 행)	(15)	(20)	(73)	(98)	(105)	(172)	(186)	(-)
(외 국 은 행)	(8)	(13)	(52)	(74)	(69)	(82)	(59)	(-)
(제2 금융권)	(-)	(-)	(-)	(-)	(-)	(-)	(68)	(-)
당 기 순 이 익	43	18	△298	△476	△155	△733	△3,355	△2,130
전기순익수정이익	-	-	△0.2	△4	0.1	2	4	-
기 본 재 산(순증)	141	226	562	832	1,046	579	△746	1,000
기 본 재 산(누 계)	610	1,346	2,552	3,879	5,783	6,805	5,043	5,989
출 연 금 누 계	494	1,115	4,255	6,626	9,142	11,535	16,438	19,515
정 부	24	24	507	807	1,177	1,307	3,077	5,277
금 용 기 관	470	1,091	3,748	5,819	7,965	10,228	13,362	14,238
이 월 이 익 금	116	231	△1,703	△2,747	△3,359	△4,731	△11,396	△13,526
신 용 보 증 잔 액	2,654	15,442	18,955	27,795	38,565	65,591	85,441	85,777
(순 증)	(1,075)	(2,890)	(3,456)	(4,592)	(5,762)	(13,645)	(13,841)	(337)
공 급 기 준	2,729	18,416	18,707	23,712	30,428	52,215	63,867	25,632

註: 1) 외환은행은 1990년도 출연분부터 시중은행에 포함.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5) 1993년에만 信用保證基金의 財源 조성액 중에서 제2금융권의 출연이 있었다(〈表 II-3〉 참조).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政府의 緊急資金支援 擴大로 당해 연도에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政府의 出捐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월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기금설립 당시의 정부출연금 23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잔액기준으로는 1983년까지 政府出捐금이 있는 것으로 計理되었으나 정부출연의 純增加는 없었던 것이다. 1993년의 金融實名制 實施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공급, 신용보증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출연 등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政府의 出捐規模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金融機關의 出捐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信用保證制度가 經濟政策的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日本과 臺灣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政府出捐比率는 크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1년 한 해 동안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연중 출연금의 65.2%가 지방공공단체의 출연금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정부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76.8%를 출연하고 있다 (<表 II-4> 참조).

<表 II-4> 信用保證機關의 基本財産 造成內譯 比較¹⁾

(單位: %)

	한 국				일 본		대 만	
	1990	1991	1992	1993	1991	1992	1990	1991
정 부	7.4	3.8	37.3	35.1	65.2	63.9	98.4	76.8
금융기관	92.6	96.2	62.7	64.9	34.8	36.1	1.6	23.2

註: 1) 연중 출연금의 비중임. 한국은 신용보증기금, 일본은 신용보증협회, 대만은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내역임.

資料: 信用保證基金.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은 주로 金融機關의 出捐金에 의해 조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출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출연 비중이 1993년 말 현재 총출연금(누계기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表 II-3> 참조).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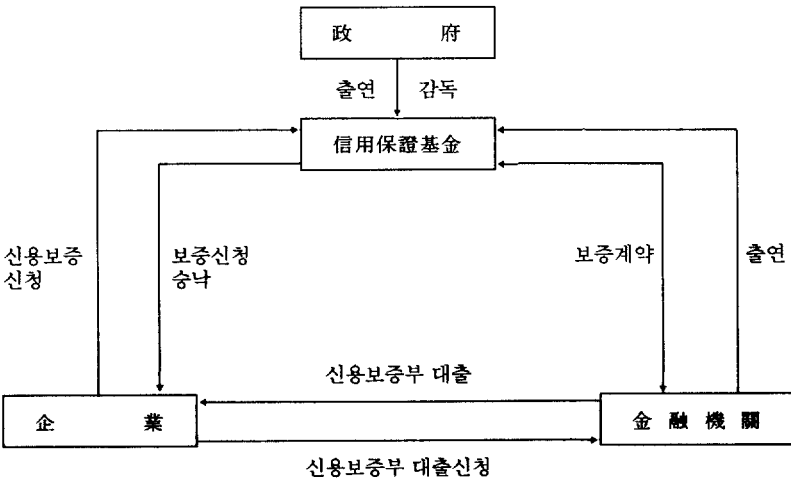
보증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은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損失을 補填하기 위한 상호 共濟的·保險的 性格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에 대한 일종의 準租稅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고 또한 出捐料率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적은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出捐金 規模에 비해서 기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代位辨濟額이 훨씬 적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I-5〉 참조).

나. 信用保證의 節次

신용보증제도는 企業(채무자), 金融機關(채권자) 및 信用保證基金(보증인)間的 金融仲介構造를 이루고 있다(〔圖 II-1〕 참조).

신용보증의 운영메커니즘은 보증종류, 보증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주된 업무인 貸出保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信用保證附貸出로 조달하고자

〔圖 II-1〕 信用保證制度의 基本構造



〈表 II - 5〉 債權銀行別 出捐 및 代位辨濟 現況

(單位:百萬元)

	1989		1991		1993		누계(1976~93)	
	출연금	대위변제액	출연금	대위변제액	출연금	대위변제액	출연금	대위변제액
중소기업은행	9,850	17,645	11,467	30,818	13,704	71,925	111,758	349,938
국민은행	4,182	8,548	5,418	13,029	7,132	53,603	59,216	160,789
산업은행	12,281	321	14,317	835	17,567	1,820	140,529	16,924
주택은행	116	115	695	1,381	1,620	2,993	8,800	8,666
수출입은행	-	213	-	3,122	-	1,903	228	12,048
장기신용은행	2,401	3,385	4,224	6,848	6,536	10,198	30,904	72,777
특수은행(計)	28,830	30,227	36,121	56,033	46,559	142,442	411,354	621,142
조흥은행	7,970	4,494	9,296	9,520	11,499	16,948	112,067	109,465
상업은행	8,895	4,985	10,229	9,108	11,791	22,354	121,122	102,214
제일은행	7,729	6,688	9,472	21,980	12,750	30,262	115,580	152,258
한일은행	7,528	6,097	8,423	7,708	11,053	19,664	110,340	109,195
서울신탁은행	8,334	13,786	9,258	14,153	10,306	22,595	130,244	201,596
신한은행	3,539	2,833	5,779	7,428	8,663	14,984	38,981	55,888
한미은행	1,149	1,463	1,733	2,400	2,333	4,760	12,896	25,003
동화은행	38	-	1,577	3,229	3,492	7,480	8,436	20,971
대동은행	6	-	790	1,673	1,354	6,519	3,624	15,352
동남은행	1	-	875	1,280	1,756	5,640	4,369	14,073
외환은행	6,690	7,013	6,729	8,697	8,089	26,953	27,897	110,812
하나은행	-	-	204	-	2,747	1,490	4,687	1,905
보람은행	-	-	143	-	2,843	935	4,759	1,030
평화은행	-	-	-	-	226	136	227	136
시중은행(計)	45,189	47,359	64,508	87,176	88,902	180,720	695,229	919,898
부산은행	2,530	2,891	3,741	3,252	4,059	17,180	35,821	52,411
충청은행	731	567	1,279	188	1,239	3,073	10,253	11,630
광주은행	690	1,312	1,265	1,513	1,433	4,883	10,034	24,453
제주은행	258	8	403	553	378	469	3,964	4,985
경기은행	1,417	1,391	2,676	6,064	2,811	11,677	18,655	47,254
전북은행	560	1,325	817	965	962	1,647	7,309	12,701
강원은행	464	113	685	877	905	5,098	5,837	9,046
경남은행	1,418	1,703	2,262	4,451	2,250	11,821	17,663	37,801
충북은행	427	136	667	78	816	756	5,912	4,931
대구은행	2,009	2,398	3,409	3,520	3,715	12,457	26,553	46,070
지방은행(計)	10,504	11,844	17,204	21,461	18,568	69,061	142,001	226,829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하는 기업은 먼저 보증기금에 保證委託의 형식으로 신용보증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에 보증부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보증기금은 해당기업에 대한 信用調査와 保證審査의 절차를 거쳐 보증승낙여부와 한도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信用保證書를 발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면 신용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다. 즉,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드는 지출은 보증료가 전부인 것이다.

다. 信用保證의 對象

신용보증기금은 資金源泉에 따라 보증 이용이 용이하도록 여러 종류의 保證을 開發·運用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保證種類로는 첫째,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間接金融에 대한 保證 둘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기업신용력을 보증하는 直接金融에 대한 保證 셋째, 企業間 信用에 대한 保證 넷째, 기업이 납부하는 稅金에 대한 保證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보증종류별 취급실적을 보면 貸出保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보증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運轉資金 및 施設資金 등을 대출받을 경우 擔保로 이용되는 보증으로 1993년 말 현재 총보증잔액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表 II-6〉 참조). 이와 같이 대출보증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은 金融機關의 擔保貸出慣行으로 자금의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信用保證을 통해 부족한 擔保力을 補完하여 은행대출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表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保守的인 貸出慣行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中小企業의 不渡가 增加함에 따라 대손발생의 우려 등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시 사후채권보전을 위한 擔保貸出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신용대출은 낮은 수준에 있다(〈表 II-8〉 참조). 다만 기금의 대출보증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부동산 등 물적담보대출에서 보증부대출로 이전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 신용보증을 통해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여 資金調達을 원활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表 II -6〉 保證 種類別 保證 實績

(單位 : 億원, %)

	1989	1990	1991	1992	1993
대출보증	30,457 (79.0)	42,404 (81.1)	54,362 (82.4)	58,701 (82.0)	72,355 (84.7)
지급보증의 보증	139 (0.4)	158 (0.3)	183 (0.3)	210 (0.3)	171 (0.2)
회사채보증	3,947 (10.2)	4,267 (8.2)	4,229 (6.5)	4,369 (6.1)	4,115 (4.8)
납세보증	11 (0.03)	7 (0.01)	11 (0.02)	9 (0.01)	15 (0.01)
어음보증	1,411 (3.7)	1,770 (3.4)	2,117 (3.2)	2,210 (3.1)	2,583 (3.0)
제2금융보증	1,494 (3.9)	2,069 (4.0)	2,767 (4.2)	3,513 (4.9)	3,520 (4.1)
시설대여보증	1,013 (2.6)	1,520 (2.9)	2,116 (3.2)	2,474 (3.5)	2,468 (2.9)
은행보증	92 (0.2)	95 (0.2)	155 (0.2)	89 (0.1)	88 (0.1)
무역어음인수담보 보증	1 (0.00)	17 (0.03)	11 (0.02)	21 (0.03)	18 (0.02)
계	38,565 (100.0)	52,306 (100.0)	65,951 (100.0)	71,600 (100.0)	85,441 (100.0)

註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資料 :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1994. 3.

〈表 II - 7〉 一般銀行¹⁾ 원貨貸出金²⁾의 擔保別 與信 構成比(金額 基準)

(單位 : %)

	1985	1990	1991	1992	1993
물 적 담 보 대 출	55.6	51.0	50.7	50.2	51.4
보 증 대 출	4.3	6.3	7.9	9.5	9.1
(신용보증기금)	(2.5)	(4.7)	(6.0)	(6.2)	(6.3)
신 용 대 출	40.1	42.7	41.4	40.3	3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1)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2) 국내에서 원貨표시대출금(외화대출 제외).

資料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1994.

〈表 II - 8〉 預金銀行¹⁾ 中小企業貸出金の 擔保別 構成比

(單位 : %)

	1988	1990	1992	1993
물 적 담 보 대 출	60.7	58.6	55.6	52.0
보 증 대 출 ²⁾	13.1	15.0	15.1	14.9
신 용 대 출	26.2	26.4	29.3	33.1
계	100.0	100.0	100.0	100.0

註 : 1)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만 포함.

2)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대출 포함.

資料 : 韓國銀行, 資金部.

반면, 회사채보증, 제2금융보증 등 여타 보증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表 II - 6〉 참조). 그 이유로는 이들 보증제도가 金融條件과 節次面에서 中小企業이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이들 제도에 대한 弘報가 제대로 안 되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어 會社債保證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장기의 안정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直接 金融方式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취약한 자본조달능력과 회사채보증 대상기업요건의 경직성⁶⁾ 등으로 同制度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출보증 이외의 여타 보증제도의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表 II - 9〉 中小企業의 會社債 發行 實績

(單位 : 億원, %)

	1989	1990	1991	1992	1993
회사채발행총액(A)	69,590	110,836	127,407	111,553	155,983
중소기업회사채(B)	12,407	27,402	35,892	17,998	25,017
B/A	17.8	24.7	28.2	16.1	16.0

資料 : 證券監督院, 『證券調査月報』, 各號.

라.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의 優待措置

1) 保證運用上的 優待

信用保證基金法上 총보증금액의 60% 이상을 中小企業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으로 1983년부터는 新規 保證을 전액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액에 대한 保證料率도 대기업(연 1.5%)과 중소기업(연 1.0%)을 구분하여 差等 適用하고 있으며 既保證殘額을 포함하여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용을 공여하여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保證審査 및 取扱上 優

6) 中小企業의 경우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純資產額이 2조원 이상인 업체,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待支援을 하고 있다. 1년 이상 보증거래를 하였거나 審査評點이 5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기업이 기금의 심사절차 없이 수시로 保證書를 發給받을 수 있는 限度去來制를 운영하고 있으며, 少額保證(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업실태작성을 생략하고⁷⁾ 신용보증 처리기간도 簡易審査의 경우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정식심사의 경우 15일 이내에서 12일 이내로 단축·지원하고 있다. 심사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라도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系列化 母企業의 보증추천을 받은 需給中小企業과 지방의 中小製造業體(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는 평점을 가점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2) 保證金額限度上的 優待

중소기업의 동일기업당⁸⁾ 최고 보증한도는 15억원(一般限度)이나 재정경제원 부총리(舊 재무부 장관)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자금(19가지)에 대해서는 特別限度 15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기업당 총보증한도는 일반한도와 특별한도를 합하여 30억원 이내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가 信用金融 擴充을 위한 信用擔保의 性格이 강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3년 金融實名制 實施 이후 예상되는 영세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긴급자금지원책으로 信用保證을 擴大시켰다. 신용보증기관의 法定保證限度를 한시적으로⁹⁾ 基本財産의 15배에서 30배로

- 7) 제Ⅲ장에서 문제점으로 다시 지적하겠지만 少額保證이라고 해서 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代位辨濟의 증가를 가져와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8) 기금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증을 방지하기 위해 同一企業의 信用保證限度를 설정하고 있다.
- 9) 金融實名制 실시 후 6개월간 信用保證限度를 확대·지원하였다. 현재는 종전대로 기본재산의 15배이다.

上向 調整하였고 또한 少額保證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시켜 3천만원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보증하고 5천만원 이하는 연간 매출액의 범위까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2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리고 그 동안 중소기업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였던 委託保證을 모든 은행으로 擴大·實施하여 대출시 최고 1억원까지는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보증까지 일괄처리 할 수 있게 하였다.

3. 信用保證制度의 運用現況

가. 信用保證 支援實績

우리나라의 信用保證制度는 역사가 짧지만 그 동안 급속한 量的 成長을 하였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와 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2조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공급하여 영세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신용보증을 확대·지원한 결과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信用保證支援의 規模는 1993년 말 현재 총 7만 6,160개 업체에 8조 5,441억원으로 신용보증이 설립된 이후 17년간 연평균 24.3%의 놀라운 공급신장을 이룩하였다. 이 같은 보증액의 규모는 그 동안 基金이 적극적으로 보증대출을 뒷받침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1) 企業規模別 保證支援

信用保證의 運用實績을 보면 中小企業에 대한 保證이 계속 늘어나 1993년 말 현재 총보증잔액의 98.8%에 이르고 있다. 1983년의 총보증

10) 종전에는 소액보증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는 연간 매출액의 1/2, 1억원 이하는 연간 매출액의 1/3을 한도로 보증하였다.

〈表 II - 10〉 信用保證實績

(單位：個, 10億圓)

	업체수	전년말 잔액 (A)	연 중 공급액 (B)	연 중 해지액 (C)	순증 (B-C)	보증잔액 (A+B-C)
1981	18,641(25.4)	1,255(74.8)	1,842(4.6)	1,553	289	1,544(23.8)
1982	20,969(12.5)	1,544(23.0)	1,549(△15.9)	1,736	△187	1,358(△12.0)
1983	19,035(△9.2)	1,358(△12.0)	1,386(△10.5)	1,433	△47	1,310(△3.5)
1984	17,962(△5.6)	1,310(△3.5)	1,649(19.0)	1,409	240	1,550(18.3)
1985	20,984(16.8)	1,550(18.3)	1,870(13.4)	1,525	346	1,896(22.3)
1986	25,027(19.3)	1,896(22.3)	2,236(19.6)	1,812	425	2,320(22.4)
1987	28,154(12.5)	2,320(22.4)	2,371(6.0)	1,912	459	2,780(19.8)
1988	35,105(24.7)	2,780(19.8)	2,727(15.0)	2,226	501	3,280(18.0)
1989	38,336(9.2)	3,280(18.0)	3,043(11.6)	2,467	577	3,857(17.6)
1990	46,098(20.2)	3,856(17.6)	4,522(48.6)	3,148	1,374	5,231(35.6)
1991	52,280(13.4)	5,231(35.7)	5,222(15.5)	3,857	1,364	6,595(26.1)
1992	55,729(6.6)	6,595(26.1)	5,419(3.8)	4,854	565	7,160(8.6)
1993	76,160(36.7)	7,160(8.6)	6,387(17.9)	5,003	1,384	8,544(19.3)

註：() 안은 연증증가율 및 전년말 대비 증가율임.

資料：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잔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에 비하여 1993년 말 현재 總保證殘額이 5.53배 증가한 데 비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保證殘額은 6.89배 증가하였다. 총보증잔액의 증가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의 증가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에 비해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支援比率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으로 1983년 이후 신규 신용보증기 전액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金融機關 貸出의 信用保證 活用度를 보아도 중소기업의 信用保證 貸出比重이 크게 擴大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중 신용보증부 대출의 비중이 1976년 말의 5.3%에서 1993년 말에는 9.9%로, 기술신용보증기금까지 합하면 12.4%로 증가하고 있어 신

〈表 II - 11〉 企業規模別 保證支援比重 推移

(單位: %)

	업 체 수		연 중 취 급 액		보 증 잔 액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1981	97.5	2.5	71.1	28.9	63.1	36.9
1983	98.7	1.3	93.1	6.9	81.6	18.4
1985	98.9	1.1	93.1	6.9	90.6	9.4
1987	99.0	1.0	95.9	4.1	93.0	7.0
1988	99.4	0.6	96.2	3.8	95.8	4.2
1989	99.5	0.5	97.5	2.5	96.9	3.1
1990	99.6	0.4	97.6	2.4	97.8	2.2
1991	99.6	0.4	98.1	1.9	97.9	2.1
1992	99.7	0.3	98.4	1.6	98.3	1.7
1993	99.8	0.2	99.1	0.9	98.8	1.2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용보증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II - 12〉 참조). 특히 中小企業 貸出의 信用保證 活用度는 1976년 말의 6.6%에서 1993년 말 현재 16.8%(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시 21.1%)로 총대출의 신용보증 활용도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가 中小企業에 대해 優先的으로 保證支援을 해주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業種別 保證 現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은 제조업, 광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등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서 정한 부동산업, 유흥음식업, 사치성 업종 등 與信禁止業種을 除外한 거의 전 업종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信用保證支援을 業種別로 살펴보면 신용보증대상업체 중 製造業이 74%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都·小賣業, 建設業 順으로 보증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II - 13〉 참조).

〈表 II - 12〉 金融機關의 貸出金 中 信用保證 活用度

(單位: 10億원, %)

	예금은행 대출금 ¹⁾			신용보증액		신용보증활용도	
	총대출액 (A)	중소기업 (B)	A/B	총보증액 (C)	중소기업 (D)	전 체 (C/A)	중소기업 (D/B)
1976	2,999	976	32.5	158	65	5.3	6.6
1979	7,165	2,703	37.7	701	398	9.8	14.7
1983	18,545	7,950	42.9	1,310	1,069	7.1	13.4
1986	29,896	12,269	41.0	2,320	2,098	7.8	17.1
1989	46,202	23,135	50.1	3,856 (4,105)	3,738 (3,984)	8.3 (8.9)	16.2 (17.2)
1991	64,906	36,856	56.8	6,595 (8,048)	6,453 (7,883)	10.2 (12.4)	17.5 (21.4)
1992	74,503	41,972	56.3	7,160 (8,435)	7,039 (8,299)	9.6 (11.3)	16.8 (19.8)
1993	86,292	50,138	58.1	8,544 (10,721)	8,441 (10,602)	9.9 (12.4)	16.8 (21.1)

註: 1) 총 원貨대출금 기준, 연말잔액기준임. 농·수·축협 및 외은지점은 제외.

2) () 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을 포함시킨 것임.

資料: 技術信用保證基金, 「年次報告書」, 各號.

信用保證基金, 「年次報告書」, 各號.

〈表 II - 13〉 業種別 保證 現況

(單位: 億원,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 타	계
1979	5,169 (73.8)	1,139 (16.3)	329 (4.7)	371 (5.3)	7,008 (100.0)
1985	13,386 (70.8)	1,893 (10.0)	2,803 (14.8)	873 (4.6)	18,955 (100.0)
1990	38,039 (72.7)	3,529 (6.7)	9,254 (17.7)	1,484 (2.9)	52,306 (100.0)
1992	52,913 (73.9)	5,394 (7.5)	10,851 (15.2)	2,302 (3.4)	71,560 (100.0)
1993	63,192 (74.0)	6,457 (7.6)	13,217 (15.5)	2,575 (2.9)	85,441 (100.0)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3) 金額別 保證 現況

金額別 保證 現況을 보면 1억원 이하의 少額保證이 보증이용기업의 85%이고 10억원 이하가 전체 보증이용기업의 98%이다. 반면 1.8%의 업체가 전체 보증금액의 2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偏重支援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실물경제상 企業의 외형이 大型化되면서 企業當 保證金額도 高額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운용배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保證의 高額化는 일부 기업에 偏重支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表 II - 14〉 金額別 保證 現況(1993年)

(單位: 億圓, %, 個)

	보증금액		업체수	
		구성비		구성비
1억원 이하	27,717	32.4	64,466	84.7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6,251	42.5	10,353	13.5
10억원 초과	21,472	25.1	1,341	1.8
계	85,441	100.0	76,160	100.0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業體當 平均 保證金額은 〈表 II - 15〉에서와 같이 점차 늘어나 1993년 말 현재 1억 1,200만원에 이르고 件當 平均 保證金額은 6,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보면 〈表 II - 16〉과 같다.

業種別 平均保證金額은 1993년 말 현재 업체당 제조업 1억 2,800만원, 광업 1억 6,300만원, 건설업 1억 5,300만원의 보증실적을 보이고 있고 企業規模別로는 1993년 말 현재 중소기업이 업체당 1억 1,100만원, 대기업은 업체당 8억 4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3년 이후 新規保證 全額이 中小企業에 지원되고 있지만 業體當 平均保證金額은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7배 정도 많고 그 금액도 계속

〈表 II - 15〉業體當·件當 平均 保證金額

(單位：百萬元)

	1985	1987	1989	1991	1992	1993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	90.3	98.7	101.0	126.1	128.5	112.2
건당 평균 보증금액	60.0	61.2	60.7	69.0	69.7	64.5

註：1)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 = 신용보증 기말 잔액 / 기말 보증업체수.

2) 건당 평균 보증금액 = 신용보증 기말 잔액 / 기말 보증건수.

資料：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表 II - 16〉企業規模別·業種別 業體當 平均 保證金額

(單位：百萬元)

		1988	1990	1992	1993
기 업 규 모 별	중 소 기 업	90	111	127	111
	대 기 업	662	610	773	804
업 종 별	광 업	102	135	164	163
	제 조 업	119	128	144	128
	건 설 업	130	173	202	153
	도 소 매 업	52	74	79	67
	기 타	45	72	91	84
계		93	113	129	112

資料：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이 10년 이상씩이나 보증을 연장하여 지원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保證期間別 保證金額比重을 보면 10년 이상 보증을 받은 업체의 보증금액이 총보증액의 17.8%를 차지하고 있다(〈表 II - 17〉 참조). 이와 같이 기업들이 信用保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表 II - 17〉 保證期間別 業體數 및 保證金額 比重

(單位: 個, %)

보증기간	1990		1993	
	업체수	보증금액비중	업체수	보증금액비중
10년 이상	1,049	14.0	1,704	17.8
6년 이상 ~ 10년 미만	2,133	21.0	4,028	22.2
4년 이상 ~ 6년 미만	3,122	16.7	5,207	14.8
2년 이상 ~ 4년 미만	7,866	21.2	11,225	20.8
2년 미만	17,374	26.4	21,593	34.4
계	31,544	100.0	43,757	100.0

註: 직접분의 업체수임.

資料: 信用保證基金.

나. 代位辨濟

최근 들어 信用保證基金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保證債務를 이행하는 代位辨濟 規模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1992년에는 자금사정이 1991년에 비해 비교적 좋아졌는 데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이 7.2%로 급증하였고 1993년에도 대위변제 규모가 보증료 수입의 5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景氣沈滯가 持續되면서 中小企業의 不渡 및 倒産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또한 基金의 效率的인 審査分析 能力的 提高가 絶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¹¹⁾.

11) 신용보증기관수가 적으면 심사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1994년 말 현재 일본은 전국에 52개의 신용보증협회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용보증기금의 본·지점이 전국에 85개가 있으므로 기관수가 적다고는 말할 수 없다.

〈表 II - 18〉 信用保證基金의 代位辨濟 推移

(單位: 億圓, %)

	1989	1990	1991	1992	1993
신용보증잔액(A)	38,565	52,306	65,951	71,560	85,441
대위변제(순)	715	622	1,423	4,427	3,419
발생액(B)	1,054	1,084	1,946	5,138	4,851
회수액	339	462	523	711	1,162
대위변제율(B/A)	2.7	2.1	3.0	7.2	5.7
보증료수입	428	596	725	794	912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表 II - 19〉 韓國·日本·臺灣의 代位辨濟率 比較

(單位: %)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2	1993
한 국	4.0	5.7	4.2	4.1	2.7	3.0	7.2	5.7
일 본	2.6	2.6	2.4	2.0	0.7	0.8	1.3	-
대 만	0.3	0.9	1.1	1.5	0.7	0.6	0.4	-

註: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액 / 신용보증잔액 × 100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다. 信用調查

信用力 不足으로 資金調達이 곤란한 기업들은 대개 物的擔保能力이 不足하거나 對外 自己信用의 確立이 未洽한 기업들이다. 基金은 이러한 기업들의 潛在的 經營能力과 發展性을 擔保로 그 신용력을 외부에 보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信用調查 및 信用資料의 綜合管理는 基金의 營業收支 개선면에서 중요한 업무일 뿐 아니라 信用調查 專門機關으로서의 기본업무라 하겠다.

신용보증기금법의 제정 당시에는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信用調查만이

기금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1979년에 一般信用調査業務가 기금의 업무로 명시되었고, 1984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에는 일반 신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개의 신용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信用調査의 用途는 주로 당좌개설용, 내국신용장 개설용, 해외회보 및 의뢰용 등으로 최근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一般信用調査에 대한 需要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조사 처리실적을 보면 설립 이후 1993년 말 현재까지 58만 1,840건에 이르고 있고 企業에 관한 우·불량정보의 보유도 97만 5,623건에 달하여 信用保證基金이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綜合管理 專門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기금의 내부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保證用 調査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또한 信用調査에 따른 手數料가 信用調査의 原價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신용조사센터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信用調査業法이 허용하는 信用調査手數料는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신용조사센터는 1994년 4월 말 현재 신규조사서 7만 5천원, 기초조사서 제공시 3개월 이내의 자료에 대해서는 7만 5천원, 1년 이내 자료는 5만원, 1년 이상된 자료는 3만원의 신용조사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조사서의 原價는 1992년 말 현재 신용조사의 종류에 따라 당좌용 17만 5천원, L/C용 10만원 수준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용조사센터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表 II-20〉 信用調査 實績 推移

(單位: 件,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처리건수	37,075	38,843	40,662	46,472	54,547	60,336	66,050
증가율	16.0	4.8	4.7	14.8	16.9	10.6	9.5

資料: 信用保證基金.

Ⅲ. 信用保證制度의 中小企業 金融擴大에 대한 效果

1. 信用保證制度和 中小企業金融의 擴大

信用保證制度가 中小企業 金融의 擴大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쉽지 않다. 信用保證의 供與가 과연 새로운 대출을 창조했는지, 아니면 기존의 대출금 내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대출을 전환하게 하였는지, 혹은 기존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하여 단순히 擔保를 補充하는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다만 설문조사에 의한 기업측의 의견과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개념적인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信用保證制度는 그 동안 中小企業 金融의 擴大에 상당히 寄與한 것으로 보여진다¹²⁾.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미약하고 적절한 담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면에서 대기업보다 취약한 조건하에 놓여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이러한 中小企業에 信用保證을 해줌으로써 中小企業의 資金에 대한 接近度를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預金銀行의 中小企業支援比率¹³⁾은 점진적으로 增加하여 1993년 말 현재 예금은행 총대출금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총대출 증가율과 통화량 증가율을 대체로 상회하

12) <表 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말 6.6% 수준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의 信用保證 活用度는 1980년대 이후 14~17%(技術信用保證基金을 포함할 경우 19~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3) 업무성격상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낮은 농·수·축협 및 외환은행은 제외하였다.

여 온 결과 그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表 Ⅲ-1〉 참조). 이와 같이 預金銀行의 中小企業支援比率이 1980년대 이후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및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확대, 제2금융권 및 직접금융시장의 확대 등으로 大企業의 資金調達에서 예금은행 차입의 비중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시장의 자율화와 자본시장의 육성 등으로 大企業은 資金調達 手段이 多樣해짐에 따라 직접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은행에 대한 장기자금수요를 크게 줄이고 있어 그만큼 預金銀行의 餘力이 中小企業의 貸出로 돌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Ⅲ-1〉 中小企業에 대한 銀行貸出 및 M2와 M3의 推移

(單位: 10億원, %)

		1979	1985	1988	1990	1992	1993
예 금 은 행 ¹⁾	총대출(A)	7,165 (35.8)	25,791 (22.4)	35,622 (11.3)	54,024 (16.9)	74,503 (14.8)	86,292 (15.8)
	중소기업 대출(B)	2,703 (46.0)	11,104 (18.0)	17,130 (24.5)	30,005 (29.7)	41,972 (13.9)	50,138 (19.5)
	B/A	37.7	43.1	48.1	55.5	56.3	58.1
M2		9,878 (24.6)	28,595 (15.6)	48,939 (21.5)	68,708 (17.2)	96,259 (14.9)	112,219 (16.6)
M3		13,379 (31.0)	54,764 (21.1)	118,135 (28.4)	193,410 (28.3)	294,844 (20.9)	349,462 (18.5)
M2/M3		73.8	52.2	41.4	35.5	32.6	32.1

註: 1) 총원금대출금 기준, 연말잔액기준임. 농·수·축협 및 외은지점은 제외.

2) () 안은 증가율임.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各號.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號.

우리나라와 같이 資金의 超過需要가 만성적으로 상존하는 상황하에서 는 대출의 총규모 측면에서 追加貸出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

고 또한 아직도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金融機關은 中小企業 貸出擴大에 대한 壓力과 동시에 貸出危險을 極小化하기 위하여 信用保證을 活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별기업 입장에서도 추가대출과 담보보완의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信用保證制度는 주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貸出을 大企業에서 中小企業으로 移行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銀行機關으로부터의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貸出比重의 상대적인 增加를 곧 中小企業에 대한 總金融支援의 擴大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간접금융시장 내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성장률이 은행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간접금융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아지게 되었다(〈表 Ⅲ-2〉 참조).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비율이 은행기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인 短資社, 生保社 및 리스社의 경우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中小企業指導比率이 설정·운용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자금은 그 규모가 작다.

〈表 Ⅲ-2〉 預金銀行과 非銀行金融機關의 貸出金 推移

(單位: 10億원, %)

	198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6
예 금 은 행	33,811 (59.1)	62,548 (50.6)	74,029 (47.9)	89,416 (46.3)	102,797 (44.2)	115,137 (42.1)	127,040 (41.6)
비은행금융기관	23,352 (40.9)	60,990 (49.4)	80,589 (52.1)	103,671 (53.7)	130,033 (55.8)	158,453 (57.9)	178,373 (58.4)
합 계 (A)	57,163 (100.0)	123,538 (100.0)	154,618 (100.0)	193,087 (100.0)	232,830 (100.0)	273,590 (100.0)	305,413 (100.0)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A)	23.1	22.5	23.1	22.7	21.3	21.1	-

資料: 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表 Ⅲ-3〉 非銀行金融機關의 中小企業支援實績

(單位: 億원, %)

	1989	1990	1991	1992	1993
단 자 회 사	34,483 (44.7)	42,691 (43.4)	43,321 (42.5)	40,442 (45.1)	38,136 (36.5)
생 명 보 험 회 사	18,217 (16.2)	28,066 (18.5)	37,318 (20.3)	43,296 (20.2)	48,816 (32.8)
리 스 회 사	53,925 (40.0)	25,235 (40.5)	101,107 (43.6)	148,259 (45.5)	164,245 (47.1)

註: () 안은 총여신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비중임.

資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現況』, 各 年度.

따라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반드시 전체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접근도를 높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表 Ⅲ-1〉, 〈表 Ⅲ-2〉 참조). 그러나 최소한 은행기관이 중소기업의 주거래 대상이라고 볼 때 信用保證制度를 통하여 中小企業의 銀行資金에 대한 接近度를 상당히 提高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企業들의 입장에서 본 信用保證制度의 寄與度

信用保證制度는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 중 가장 效率的이고 中小企業의 호응이 높은 制度로 評價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이용도는 매년 증가하여 1992년 말에는 중소기업체의 50%가 신용보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필자들이 실시한 中小企業의 信用保證制度 活用 實態에 관한 設問調査¹⁴⁾에도 응답업체 (230개 업체) 가운데 54.5%의

14) 設問調査 方法 및 설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I 장의 각주 2) 및 〈附錄 1〉을 참조.

〈表 Ⅲ-4〉 中小製造業體의 信用保證利用度

(單位: 個, %)

	중소제조업체수(A)	신용보증 중소기업체수(B)	이용도(B/A)
1985	42,950	11,826	27.5
1987	53,102	15,228	28.7
1989	64,446	22,777	35.3
1991	71,105	34,397	48.3
1992	73,657	36,815	50.0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月報』, 各號.

중소기업들이 네 차례 이상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의 53%가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고 41%는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자금 조달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表 Ⅲ-5〉, 〈表 Ⅲ-6〉 참조).

〈表 Ⅲ-5〉 信用保證制度의 規模別 活用度

(單位: %)

	1~20인	21~50인	51~100인	101~200인	201인 이상	전 체
처음 이용	11.3	3.8	13.9	5.9	20.0	8.9
2~3차례 이용	38.0	46.8	27.8	17.7	10.0	36.6
자주 이용	50.7	49.4	58.3	76.5	70.0	5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企業이 信用保證制度를 利用하게 된 動機는 80% 이상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없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Ⅲ-7〉 참조).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 擔保不足이 가장 큰 隘路事項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貸出限度의 不足이 문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해주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表 Ⅲ-8〉 참조).

〈表 Ⅲ-6〉 企業規模別 資金調達에 대한 信用保證制度의 寄與度

(單位: %)

	전혀 기여못함	별로 기여못함	기여하였으나 기대에 미흡	효과적	매우 효과적	계
1~ 20인	-	1.4	43.7	38.0	16.9	100.0
21~ 50인	-	5.1	40.5	36.7	17.7	100.0
51~100인	2.8	8.3	33.3	27.9	27.7	100.0
101~200인	5.9	5.9	52.9	17.6	17.6	100.0
201~300인	-	10.0	40.0	10.0	40.0	100.0
전 체	0.9	4.7	41.3	32.9	20.2	100.0

註: 소기업은 20인 이하, 중기업은 21~300인 이하로 구분됨.

〈表 Ⅲ-7〉 企業規模別 信用保證制度의 利用動機

(單位: %)

	신용보증 없이는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	신용보증으로 보다 좋은 조건의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1~ 20인	90.1	9.9
21~ 50인	84.8	15.2
51~100인	86.1	13.8
101~200인	76.5	23.5
201~300인	60.0	40.0
전 체	85.0	15.0

〈表 Ⅲ-8〉 銀行貸出을 받기 어려운 要因

(單位: %)

	담보부족	대출한도부족	여신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거절	대출조건 및 절차복잡
1~ 20인	91.6	2.8	5.6	-
21~ 50인	91.1	2.5	-	6.4
51~100인	91.7	2.8	-	5.5
101~200인	76.5	11.8	-	11.7
201~300인	80.0	20.0	-	-
전 체	89.7	4.2	1.9	4.2

企業規模別 貸出條件을 보면 소규모 영세기업일수록 담보대출보다는 보증부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表 Ⅲ-9〉 참조). 이는 금융기관의 擔保貸出慣行이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담보가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보증을 받아오도록 하는 금융 관행을 반영하기도 한다.

〈表 Ⅲ-9〉 企業規模別 貸出條件

(單位: %)

	담 보 대 출	보 증 부 대 출	신 용 대 출
1~ 20인	56.34	67.61	5.63
21~ 50인	58.23	69.62	10.13
51~100인	72.22	63.89	13.89
101~200인	82.35	41.18	17.65
201~300인	70.00	30.00	20.00
계	62.44	63.85	10.33

註: 1. 복수응답으로 100%가 넘는 경우가 있음.

2. 소기업은 20인 이하, 중기업은 21~300인 이하로 구분됨.

신용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들의 60% 이상이 자금조달 대체 수단으로 私債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자금원이 없는 경우가 전체 설문대상업체 중의 25.3%나 되었고 기타 가까운 친척의 자금을 빌려 조달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최종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보증 공급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企業規模別 信用保證貸出의 用途를 살펴보면 대부분 運轉資金과 施設資金에 이용되고 창업지원이나 기술개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반영한다.

〈表 Ⅲ-10〉 企業規模別 資金調達 代替手段

(單位: %)

	1~20인	21~50인	51~100인	101~200인	201인 이상	전 체
사 채	66.2	60.8	52.8	70.6	60.0	62.0
자기자본	7.0	8.9	11.1	23.5	30.0	10.8
대체자금원이 없음	26.7	25.3	36.1	5.7	10.0	25.3
기 타	-	5.1	-	-	-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Ⅲ-11〉 企業規模別 信用保證貸出의 用途

(單位: %)

	창업지원	기술개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 타
1~ 20인	1.4	12.7	47.9	50.7	7.0
21~ 50인	3.8	16.5	35.4	64.6	3.8
51~100인	0.0	5.6	33.3	69.4	13.9
101~200인	0.0	11.8	47.1	70.6	-
201~300인	10.0	10.0	60.0	60.0	10.0
전 체	2.4	12.7	41.3	61.0	6.6

註: 복수응답으로 100%가 넘는 경우가 있음.

IV. 現行 信用保證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1. 問題點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信用保證制度는 우리나라의 中小企業 金融 擴大에 상당히 寄與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現行 制度의 運用上 改善를 要하는 問題點들도 적지않다고 보여진다. 어떤 제도이든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費用이 든다. 그러나 똑같은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을 들일 수 있을 때 그 制度는 效率的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신용보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가. 높은 代位辨濟率과 保證支援 餘力の 萎縮

信用保證制度는 金融機關의 貸出機能을 補完하는 廣義의 金融行爲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는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여서는 안 되며 따라서 事業性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保證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의 높은 代位辨濟率은 이러한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2년 이후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信用保證機關이 市場의 失敗를 보완하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所得補助的인 機能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代位辨濟率의 增加要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경기의 위축, 통화긴축정책의 지속 등으로 中小企業의 不渡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1991년 이후 세계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경기는 수출부진 등으로 沈滯局面이 持續되었고 中小企業의 資金難이 深化되었다. 또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限界中小企業들이 연쇄적으로 不渡를 내거나 倒産하였다. 이에 따라 信用保證事故가 急增하여 1992년중 사고발생률은 연중 보증액의 15.7%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고 1993년에는 사고발생 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事故正常化의 어려움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保證事故가 過多하게 발생하면 그만큼 代位辨濟가 增加하여 基本財産을 蠶食시킨다. 현재 기본재산의 상당부분은 건물, 비품, 조건부 장기성예금 등에 투입되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보증채무이행에 충당해야 할 준비금이 감소됨을 뜻한다. 따라서 代位辨濟에 따르는 損失은 신용보증의 공급확대를 위축시키는 등 保證基金의 經營收支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친다.

〈表 IV - 1〉 年度別 信用保證事故 및 正常化率 推移

(單位: 億圓, %)

	금년도 보증 공급액 (A)	금년도 사고발생		금년도 사고정상화		사고잔액	
		발생액 (B)	발생률 (B/A)	금 액 (C)	정상화율 ¹⁾	(B-C)	사고율 ²⁾
1985	18,707	1,570	8.4	1,027	43.9	543	2.9
1986	22,365	1,605	7.2	592	27.2	1,013	4.4
1987	23,712	1,777	7.5	734	28.5	1,043	3.8
1988	27,266	2,045	7.5	912	31.7	1,133	3.5
1989	30,428	1,850	6.1	857	32.4	993	2.6
1990	45,224	2,097	4.6	914	32.5	1,183	2.3
1991	52,215	4,089	7.8	1,350	27.3	2,739	4.2
1992	54,191	8,495	15.7	1,991	19.5	6,504	9.1
1993	63,867	6,323	9.9	2,120	21.9	4,203	4.9

註: 1) 사고정상화율 = 사고정상화액 / (전년도 사고잔액 + 금년도 사고발생액).

2) 보증잔액 대비율.

資料: 信用保證基金.

둘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政策的 介入으로 때때로 무리한 保證目標을 할당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심사평가기능이 부실하게 되고 그 결과 代位辨濟를 增加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信用保證目標에 대한 政策的인 介入은 제반 여건 등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의도는 保證實績의 量的 成長을 가져오는 등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보증목표의 달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조사자 또는 심사자가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평가보다는 기존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에 매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信用保證基金의 中小企業 專門 信用調查機關으로서의 役割을 미약하게 하고 사고발생시 높은 損失을 가져와 代位辨濟의 規模를 擴大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代位辨濟率의 지속적인 增加는 신용보증기관의 基本財産을 蠶食시키므로 기금의 保證支援能力이 크게 低下된다. <表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이후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1994년 6월 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기본재산의 14.3배로 법정한도인 15배에 근접하는 등 保證餘力이 거의 限界에 와 있다. 특히 1993년에는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特例保證實施¹⁵⁾로 운용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16.9배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대위변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信用保證機關 保證財源의 追加確保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규 보증취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5)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金融實名制 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命令」 제16조에 의거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법정 보증한도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6개월간 기본재산의 15배에서 30배 이내로 확대·운용토록 하였다.

〈表 IV-2〉 信用運用倍數 推移

(單位: 億圓, %, 倍)

	1990	1991	1992	1993	1994.6
보증잔액 (A) (중감률)	52,306 (35.6)	65,951 (26.0)	71,600 (8.5)	85,441 (19.3)	85,777 (-)
기본재산 (B)	6,225	6,805	5,789	5,043	5,989
운용배수 (A/B)	8.4	9.7	12.4	16.9	14.3
대위변제율 (순증)	1.4	2.4	6.4	4.6	-

資料: 信用保證基金.

나. 全額保證制度에 따른 道德的 解弛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기업의 보증부 대출액에 대해 100% 保證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危險分擔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보증제도 하에서는 金融機關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impact)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금융기관은 대출기업에 대한 事前與信審査나 事後管理를 열심히 할 制度的 誘引이 약하고 貸損危險이 높은 대출을 보증부로 무절제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기관 자체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려는 유인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道德的 解弛를 줄이기 위해서 一般保險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일정수준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全額保險을 해주는 상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신용보증기관의 全額保證으로 중소기업의 금융확대에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금융기관 스스로가 신용정보를 축적하여 信用貸出慣行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다. 基金造成을 위한 金融機關 出捐方式의 問題

현재 대출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金融機關의 出捐은 금융기관에 대한 默示的인 租稅인 동시에 일반 차입자로 하여금 신용보증을 받는 차입자에 대하여 cross subsidize하게 하는 자원배분상의 문제가 있다.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상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낮은 은행들도 그들의 대출성격과 관계없이 一定比率을 신용보증기관에 出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出捐 規模에 비해서 중소기업대출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代位辨濟額이 훨씬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지원에 출연하고 있다. 이는 貸出에 부과되는 높은 利子를 지불하는 일반차입자들이 신용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間接的으로 補助金을 支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신용보증제도의 受惠者가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을 하는 金融機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혜택과 비용부담간에 적절하고 效率的인 配分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金融自律化가 확대되고 金融市場이 전면 開放化되어 금융기관간의 競爭이 深化되어 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出捐은 금융기관입장에서 상당한 費用負擔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默示的 租稅 내지 競爭力 低下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 保證業務의 硬直的인 運營

현재 保證料가 보증대상기업의 信用度에 따라 差等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보증액의 1%를 一律的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량기업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증수요를 증대

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信用保證을 한번 받은 경우에는 거의 固定化되고 있어 新規企業에 대한 保證餘力を 制約하고, 개별 기업의 保證規模가 점차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表 II-15〉, 〈表 II-17〉 참조)¹⁶⁾.

신용보증업무상에 있어서도 節次가 複雜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適時 資金支援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필자들의 設問調査에 의하면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취약한 擔保力を 補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할 때에 보증한도의 부족(57.3%), 엄격한 심사기준(33.3%), 과도한 구비서류(23.9%)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IV-3〉 참조).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불편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엄격한 審査基準을 느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保證節次가 非效率的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도 있다.

〈表 IV-3〉 企業規模別 信用保證制度 利用의 隘路事項

(單位 : %)

	심사기준 엄격성	보증한도 부족	구비서류 과다	보증기간 짧음	보증료 부담	소액보증 미흡	기 타
1~ 20인	36.6	54.9	28.2	9.9	8.5	1.4	2.8
21~ 50인	27.9	60.8	18.9	5.1	11.4	1.3	2.5
51~100인	36.1	55.6	22.2	8.3	2.8	2.8	-
101~200인	35.3	64.7	29.4	-	-	-	-
201~300인	40.0	40.0	30.0	20.0	10.0	-	-
전 체	33.3	57.3	23.9	7.5	8.0	1.9	1.9

註 : 복수응답으로 100%가 넘는 경우가 있음.

16) 鄭健洛,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9 참조.

2. 앞으로의 改善方向

이상과 같은 問題點들을 補完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信用保證制度를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保證餘力の 擴大와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新規保證의 擴大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보완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가. 出捐金の 擴大 및 出捐方式의 再調整

무엇보다도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信用保證基金의 財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금융을 원할화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이외에, 급변하는 金融市場環境 및 앞으로의 金融·財政政策의 方向을 함께 고려하여 그 개선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政府出捐의 擴大

앞으로 WTO 체제의 출범, 그리고 국내 금융자유화의 확대 등과 더불어 中小企業에 대한 각종 政策金融은 점차 縮小되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金融機關이 스스로의 금융자원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貸出을 擴大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信用保證制度의 지속적인 擴大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관의 保證餘力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基金의 規模를 확대하거나 運用倍數를 擴大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높은 대위변제율하에서 운용배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당분간 출연을 확대하여 기금의 규모를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基本財産은 보증채무에 대한 1차적인 이행담보일 뿐만 아니라 총보증한도운용의 기준이 되므로 基金이 公信力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基本財産의 擴充이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1981년부터 계속하

여 營業損失을 시현하였고 최근 代位辨濟가 急増함에 따라 財源不足으로 기금의 보증여력이 거의 바닥상태에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재원을 확충하여 新規保證餘力を 擴大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같은 出捐이 금융기관에 대한 默示的인 租稅(implicit tax)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방화·자유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政府出捐의 擴大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현재와 같이 정부가 信用保證을 중소기업지원제도로써 政策的으로 運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향후 信用保證制度의 운영 자체가 보다 效率的이며 self-sufficient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制度的 改善策을 마련하는 노력을 동시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金融機關 出捐의 점진적 縮小

앞으로 金融이 더욱 自律化·開放化됨에 따라 국내 金融機關間의 競爭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일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貸出金에 比例하여 一律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出捐토록 하는 제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금융기관의 출연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 등은 산업은행, 주택은행 등 은행기관보다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으면서도 출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表 IV-4> 참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출금 잔액의 0.2%(기술신용보증기금 0.1%를 합해서 0.3%)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金融機關의 出捐料率을 재정

〈表 IV-4〉 制度圈 中小企業 貸出市場의 金融機關別 比重 推移

(單位: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일 반 은 행	34.6	31.2	34.2	38.3	33.6	32.2	32.0
시 중 은 행	23.3	21.5	23.6	26.1	23.2	22.7	22.8
지 방 은 행	9.6	8.4	9.2	10.8	9.2	8.5	8.6
외 은 지 점	1.6	1.4	1.4	1.4	1.2	1.0	0.6
특 수 은 행	36.2	30.4	28.1	28.2	24.6	24.1	25.1
기 업 은 행	14.8	12.6	11.5	11.0	9.1	8.8	9.1
국 민 은 행	6.0	5.0	4.4	4.4	3.8	3.9	4.6
산 업 은 행	1.9	1.7	1.8	1.8	1.7	2.0	1.8
수 출 입 은 행	-	0.1	0.1	0.3	0.3	0.3	0.3
장 기 신 용	2.7	1.9	2.0	2.2	2.3	2.3	2.3
주 택 · 농 수 축 협	10.8	9.1	8.3	8.5	7.4	6.9	7.0
제2 금 용 권	29.2	38.4	37.7	33.5	41.8	43.7	42.9
단 자 사	7.6	7.8	7.3	7.4	5.3	4.2	2.7
종 금 사	0.7	1.1	0.6	0.7	0.9	1.0	0.8
상 호 신 용 금 고	9.7	8.3	7.4	8.5	11.6	10.6	9.7
보 험 사	4.2	4.3	4.3	5.4	5.1	4.9	4.8
리 스 사	2.7	12.6	11.3	4.4	12.5	15.5	17.2
은 행 신 탁 ¹⁾	4.2	4.3	6.8	7.1	6.4	7.5	7.7
총 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시중 7개 은행만 포함.

資料: 崔長鳳·安鍾吉·李基榮, 『21世紀를 향한 國民銀行의 綜合金融서비스體制 構築 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租稅研究院, 1994. 6.

여건을 보아가며 점차 下向調整하고, 제2금융권의 출연 등 出捐對象 金融機關을 擴大하여 금융기관의 출연부담을 옅고 넓게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제2금융권의 신용보증기금 이용 증대와 병행하여 제2금융권도 출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는 제2금융권의 負擔料率을 은행권의 1/4 혹은 1/2 수준으로 하여 제2금융권의 收支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出捐對象을 넓게 하고 점진적으로 금융기관 전체의 出捐比率를 낮추어 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일정수준의 財政出捐에 의하여 기금이 조성되고 대위변제율을 낮추어 獨立의인 財政與件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나. 信用調査 · 評價機能의 提高 및 政策的 介入의 縮小

信用保證機關의 信用調査 및 評價機能이 크게 提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 공여에 대한 外部의 介入이 縮小되어야 한다. 信用保證基金의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전문 신용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기업에 대한 소득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審査評價機能을 活性化하여 效率的인 審査分析을 통한 보증대상기업의 선정으로 대위변제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신용정보의 적극적인 수집은 신용조사전문기관으로서 信用調査 및 情報의 商品化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基金의 營業收支 개선에 直 · 間接的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게 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수행하므로 국내의 다른 신용조사기관과는 差別的인 企業信用情報를 構築할 수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정보수집능력 등 신용조사전문기관으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판매, 신용조사작업 대행 등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業務領域의 開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信用情報가 市場性을 갖고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信用調査情報시스템의 구축과 專門調査人力의 교육 및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기초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의 고도화는 效果的인 情報處理와 보다 信賴性 있는 信用評價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이유 중

의 하나가 기업에 대한 공인된 신용조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용조사서의 표준화 등은 신용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창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企業情報에 대한 需要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의 審査能力을 금융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개별기업의 신용평가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보의 가공생산, 기업경영진단 서비스 등 새로운 情報商品을 開發할 경우 보증기관 財政의 獨立性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보증기관수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지나친 政策的 介入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信用保證制度가 政策的인 制度이기는 하지만 信用保證機關이 金融機關으로서의 自生力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信用保證을 供與하는 것이 하나의 특례처럼 인식되어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외부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客觀的·效率的인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이 어려워져 그 결과 대위변제와 국가의 재정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1992년 이후 자금사정이 1991년에 비해 비교적 좋아졌는 데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이 1991년의 3.0%에서 1992년 7.2%, 1993년 5.7%로 늘어난 것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信用保證制度가 政策的으로 中小企業金融支援制度로서 운용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나친 정치적·정책적 개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 部分保證制度의 導入과 道德的 解弛의 縮小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의 信用保證制度는 기업의 보증부대출에 대해 全額 保證을 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위험분담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金融機關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problem)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道德的 解弛를 줄이는 방안으로 금융기관도 신용보증대출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는 部分保證制度를 도입하여 金融機關 스스로가 貸出審査와 事後管理를 엄격히 해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금융기관 스스로가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신용대출을 해나갈 수 있을 때 현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신용보증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신용보증제도의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여력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表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部分保證制度를 하거나 再保險制度 및 信用保證保險制度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보

<表 IV-5> 主要國의 保證比率 現況

	보 증 비 율
미 국	대출액 15만 5천달러 이하:대출액의 90% 대출액 15만 5천달러 초과~75만달러까지:대출액의 85%
캐 나 다	대출손실금의 85% 보증, 나머지 15%는 금융기관 부담
프 랑 스	-이론적으로는 100% 보증 -은행은 대출금의 50%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구(SDR)나 상호신용기구(OCM)에 역보증 → 실제보증비율:50% -채무자는 은행부담부분에 대하여 담보나 인적보증을 은행에 추가로 제공
독 일	신용보증회사(KGG)가 용자액의 80% 보증, 나머지 20%는 취급금융기관 부담 80% 중 일정비율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60:40의 비율로 재보증(재보증비율은 구서독지역 65%, 구동독지역 80%)
영 국	보증기관이 70% 보증, 나머지는 대출기관 부담
일 본	-신용보증협회:은행대출금에 대해 100% 보증 -이중 70~80%를 중소기업신용보증공고에 재보험
대 만	80~90%,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부담
필 리 핀	소기업 60%, 중기업 40%
인 도	보증기관이 50~60% 보증, 나머지는 대출기관이 위험부담

資料 : Levitsky Jacob and Ranga N. Prasad,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World Bank, 1989.

信用保證基金.

증기관이 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상호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 臺灣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 일부를 책임지는 部分保證制度를 채택하고 있어서 보증사고 발생 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事故正常化 및 債權回收의 적극성 등을 유도하기 있기 때문에 보증사고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대위변제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部分保證의 경우 대출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신용력을 평가하여 자신의 危險負擔을 커버할 수 있도록 擔保取得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는 短期的으로 금융기관이 신용대출로 인한 損失危險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보증의 이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信用評價 能力을 提高하게 하고 신용보증제도가 단순히 擔保를 대체하는 역할이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의 金融機關 去來에 대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부분보증제도의 도입으로 대위변제율을 줄이고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 保證料率의 現實化 및 差等化

보증료를 보증신청인의 信用度에 따라 差等化하고 代位辨濟水準을 감안하여 現實化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보증기관이 계속 赤字를 시현하는 현 상황에서 기본재산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保證餘力の 擴大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자체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보증료의 현실화 및 차등화는 기금의 營業收支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증료의 조정기능을 회복시키고 長期的으로는 우량기업에 대한 保證擴大와 대위변제의 감소를 통하여 收支改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1) 保證料率의 現實化

보증료 수입은 기금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증료 수입만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인 관리업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保證料率이 代位辨濟率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基本財産을 蠶食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의 出捐負擔을 加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保證料率이 기업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및 금액규모 등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은 年 1%, 대기업은 年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 한도를 정하여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債務를 保證하여 기업에 대한 資金供給을 원활하게 한다는 信用保證基金法上的의 입법취지와 부응하는 면이 있지만 보증료는 기본적으로 危險引受의 代價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증을 받는 기업의 信用度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증료의 보다 伸縮的인 運用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事後的(ex-post)으로 損益分岐點 保證料率은 적어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수준 이상이 되어야 신용보증기관이 金融機關으로서의 財政自立度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表 IV-6>에서와 같이 손익분기점 수준의 保證料率은 대부분 2.0% 이상이며, 대위변제손실이 급증한 1992년과 1993년에는 6.5% 이상의 수준으로 이는 신용보증기금 운영상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그러나 신용보증제도가 政策的인 制度라는 것을 고려할 때 保證料率을 損益分岐點 水準까지 올리지는 못할 것이며 또한 保證料率을 과다하게 올리게 되면 이에 따른 逆選擇(adverse selection) 效果¹⁷⁾로 오히려 수익률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17) 보증료를 크게 올리게 되면 債務不履行 確率이 낮은 기업은 필요없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반면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기업은 여전히 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선호하게 되어(adverse selection) 전체 보증기업의 代位辨濟率이 올라 갈 수 있다.

〈表 IV-6〉 損益分岐點 水準의 保證料率 算出

(單位: 億원, %)

	1989	1990	1991	1992	1993
영업수익(A)	820	1,006	1,291	1,307	1,175
보증료 등	343	435	564	680	730
여유금 운용	431	527	685	573	378
기타	46	44	42	54	67
영업비용(B)	1,086	1,697	2,118	4,787	4,647
관리업무비	410	483	591	694	823
대위변제손실	664	1,201	1,513	4,071	3,800
기타	12	13	14	22	24
영업손실(B-A)	△266	△691	△827	△3,480	△3,472
손익분기점 비율 ¹⁾	2.00	2.49	2.66	7.68	6.58

註: 1) 손익분기점 비율 = [영업비용 - (영업수익 - 보증료 등)] / 당해 보증순이익 × 100.

資料: 信用保證基金, 『年次報告書』, 各號.

한편 1988년 6월 「韓國銀行의 金融機關 與受信 利率 등에 관한 細則」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이외의 여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최고 한도율이 폐지되고 자유화되었다. 따라서 각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貨支給保證料는 年 1.5%(중소기업발행 CP 할인 관련 보증료는 年 2.0%)를 기본으로 하여 顧客의 寄與度, 信用度에 따라 同 保證料率을 초과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다른 나라 보증기관의 保證料率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신용보증기금의 保證料率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表 IV-7〉 참조). 특히 臺灣의 경우 보증료 수입이 제도운영의 기본적 경비인 관리업무비의 약 3~4배 수준에 이른다. 1990년 대만의 보증료 수입은 3억 8천만NT달러로 관리업무비(1억 3천만NT달러)의 약 3배이고 여유금 운용수익(9억 2천만NT달러)도 관리업무비의 10배 수준에 이른다.

〈表 IV-7〉 外國 保證機關의 保證料

	보 증 수 수 료
미 국	보증금액의 2%(소액보증 1%)를 중소기업청(SBA)에 납부
캐 나 다	대출금의 1%
프 랑 스	수수료:1~2%(대출만기에 환불) 운영수수료:보증액의 1~2%
독 일	각주의 신용보증회사(KGG)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평균적으로 보증신청시 취급수수료:0.5~1.0% 보증잔액에 대한 수수료:0.5~1.0%
영 국	보증금액의 4%
일 본	기본요율:연 1.0% 각 협회별로 제도보증료율, 금액별 보증료율 산정
대 만	보증종류별로 상이함(관세보증:0.25%, 이행보증:0.5%, 그 외:0.75%)
필 리 핀	대부잔액 중 보증된 부분의 2.0%

資料: Levitsky Jacob and Ranga N. Prasad,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World Bank, 1989.

信用保證基金.

필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업체의 93%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부대비용 등 자금대출과 관련된 경비지출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나머지 7%는 별로 많지 않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信用保證機關도 自生力을 높이고 市場機能에 의한 效率의인 運用을 하기 위해서는 代位辨濟 水準을 감안하여 保證料率의 상한을 현재의 수준에서 다소 상향조정(0.5~1.0%)하고 위험도에 따른 差等 保證料率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保證料率의 彈力的 運用

최근 金利自由化가 진전되면서 각 金融機關의 貸出金利가 자금의 원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差等 運用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保

證料率의 差等化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서 保證料率을 保證種類別 危險水準에 따라 差等化하는 것이다. <表 IV-8>에서와 같이 어음보증, 이행보증 등은 위험률이 다른 보증 종류보다 훨씬 낮다. 이와 같이 위험률이 낮은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保證料率을 낮추고 위험률이 높은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保證料率을 높여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表 IV-8> 保證種類別 危險率(1993年 基準)

(單位: 億원, %)

	신용보증잔액(A)	사고잔액(B)	위험률(B/A)
대출보증	72,355	2,262	3.1
지급보증의보증	171	44	25.7
사채보증	4,115	262	6.4
납세보증	15	-	0.0
어음보증	2,583	49	1.9
제2금융보증	3,520	97	2.8
시설대여보증	2,575	192	7.4
이행보증	88	1	1.2
무역어음인수보증	18	6	33.3
계(평균)	9,493	323	3.5

資料: 信用保證基金, 『保證基金統計年報』, 1994.

나아가서 같은 종류의 보증이라도 保證對象 企業의 信用度에 따라서 保證料率을 점차 差等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企業의 信用度는 그 기업의 보증거래실적 및 신용평점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1987~1989년 동안 신용평점이 30점 미만인 기업과 70점 이상인 기업의 사고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사고건수 비율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⁸⁾.

18) 信用保證基金,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에 관한 研究』, 1990 참조.

따라서 신용보증 이용자의 信用과 그에 따른 危險을 반영하는 彈力的인 信用保證料率의 구성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優待料率을, 그리고 거래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割増料率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零細 小規模 業體나 창업초기로 信用度는 낮으나 政府의 主力事業이거나 투자가 건실하고 유망한 環境關聯事業, 新技術開發事業 등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려 예외적으로 기본요율을 적용하는 優待措置方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文秀, 「中小企業金融과 信用保證에 관한 小考」,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5. 겨울호.
- 技術信用保證基金, 「北美的 信用保證制度」, 『技術保證月報』, 1993. 1.
——, 『年次報告書』, 各號.
- 金淵星, 「中小企業을 위한 信用保證制度의 效率化 方案」, 『韓國의 小規模 企業』, 國民家計經濟研究所, 1992. 12.
- 김원중, 「獨逸의 信用保證制度」, 『保證月報』, 1994. 10.
- 민해영, 「信用保證制度의 發展 過程과 우리의 課題」, 『技術保證月報』, 技術信用保證基金, 1991. 9.
- 白洛基 外, 『中小企業支援制度의 活用實態와 效果分析』, 產業研究院, 1992. 3.
- 商工資源部, 「金融實名制 實施 2個月 後 中小企業 動向」, 보도자료, 1993. 10.
- 信用保證基金, 『信用保證基金 10年史』, 1986.
——,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에 관한 研究』, 1992.
——, 『年次報告書』, 各號.
——, 『保證基金統計年報』, 1992~1994.
- 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韓國銀行, 1994.
- 李得熙, 「臺灣의 信用保證制度 및 危險管理政策」, 『保證月報』, 信用保證基金, 1994. 3.
- 李鶴松, 「우리나라 信用保證制度의 當면과제와 개선방향」, 『保證月報』, 信用保證基金, 1994. 3.
- 鄭健溶,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9.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 現況』, 各號.
- 證券監督院, 『證券調查月報』, 各號.

崔長鳳·安鍾吉·李基榮, 『21世紀를 향한 國民銀行의 綜合金融서비스 體制 構築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租稅研究院, 1994. 6.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號.

———, 『通貨金融』, 各號.

韓國銀行 金融制度課, 「信用社會 定着方案」, 보도자료, 1994. 5. 12.

Jacob, Levitsky and Ranga N. Prasad,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58, Industrial and Finance Series, The World Bank, 1989.

Stiglitz, I. E.,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aper prepared for 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The World Bank, 1993.

〈附錄 1〉 信用保證制度에 관한 企業設問調査書

1994. 7. 25.

수 신 : 대표이사님께

발 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부장 조윤제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원은 재무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으로서 조세제도 및 재정·금융정책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개방화·국제화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지원시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본 설문문의 목적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중의 하나인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 금융확대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해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설문은 익명이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대답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하오나 부디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모든 항목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반송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부 조윤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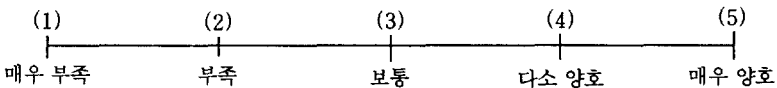
(TEL) 529-4883, 572-0810 (FAX) 574-9183, 573-3698

A. 기업체의 개황

1. 창업연도 : ()년
2. 기업형태 : 1) 주식회사() 2) 기타법인() 3) 개인기업()
3. 주요업종 : 1)
 2)
4. 자본금 : 1) 자기자본 _____ 억원 (1993년 기준)
 2) 총자본(총자산) _____ 억원(1993년 기준)
5. 종업원수 : ()명(1993년 기준)

B. 중소기업 금융 실태 및 신용보증기금 이용에 관한 사항

1. 귀사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2. 귀사는 필요한 자금을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규모가 큰 순서로 3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 (1) 창업자금 () () ()
- | | |
|---------------------------|---------|
| 1) 자기자본 | 2) 은행차입 |
| 3) 제2금융권 | 4) 私債 |
| 5) 기타 (내용기록:) | |
- (2) 시설자금 () () ()
- | | |
|--------------------------|----------|
| 1) 자기자본(사내유보 및 증자 등) | 2) 회사채 |
| 3) 은행차입 | 4) 제2금융권 |
| 5) 私債 | 6) 기업간신용 |
| 7) 기타(내용기록:) | |

(3) 운전자금 () () ()

- | | |
|-----------------------|----------|
| 1) 자기자본 (사내유보 및 증자 등) | 2) 회사채 |
| 3) 은행차입 | 4) 제2금융권 |
| 5) 私債 | 6) 기업간신용 |
| 7) 기타(내용기록:) | |

3.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시 대출조건은?

- | | |
|----------|---------------------|
| (1) 담보대출 | (2) 신용보증부대출(신용보증기금) |
| (3) 신용대출 | (4) 기타 |

4. 외부자금 차입시 우선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1) 금리 | (2) 담보 |
| (3) 적기지원여부 | (4) 대출기간 |
| (5) 자금지원 규모 | (6) 기타() |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으로 3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 | | |
|-------------------------------|-----|
| (1) 대출한도의 부족(미흡) | () |
| (2) 적기 차입 곤란 | () |
| (3)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 | () |
| (4) 담보부족 | () |
| (5)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의 활용)을 받기 어렵다. | () |
| (6) 예금, 적금 등의 가입 강요(꺾기) | () |
| (7)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이 좋지 않다. | () |

6. 귀사는 신용보증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 | | |
|-------------------|--------------------|
| (1) 처음 1회 이용하였다. | (2) 2~3차례 이용하였다. |
| (3) 4차례 이상 이용하였다. | (4)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

7. 신용보증기금의 이용동기는?

- (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없이는 은행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용
- (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기 위해 이용

8. 신용보증기금의 이용동기가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담보부족
- (2) 은행대출 한도의 부족
- (3) 여신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거절
- (4) 대출조건 엄격 및 절차복잡
- (5) 기타(이유:)

9. 만약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귀사는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1) 私價
- (2) 자기자본
- (3) 다른 대체자금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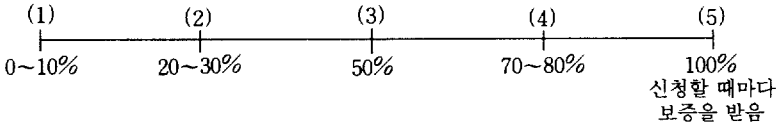
10. 신용보증기금 이용상 애로사항은?

- (1) 심사기준의 지나친 엄격성
- (2) 보증한도의 부족
- (3) 구비서류의 과다 및 절차 복잡
- (4) 보증기간이 짧음
- (5) 보증료 부담이 과다
- (6) 소액보증제도의 미흡
- (7) 기타(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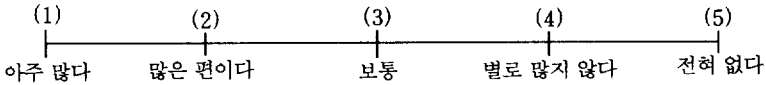
11. 귀사는 어떤 목적의 필요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대출 받았습니까?

- (1) 창업지원
- (2) 기술개발
- (3) 공정개선, 자동화, 노후시설개체 등 생산성 향상
- (4)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지원
- (5) 기술인력양성
- (6) 기타(내용기재:)

12.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률은 어느 정도였는가요?



13. 귀사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책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을 때 부대비용 등 자금대출과 관련된 경비지출의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14. 귀사는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 (2)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 (3) 기여는 하였으나 기대에 미흡하였다.
- (4) 효과적이다.
- (5) 매우 효과적이다.

* 무더운 날씨에 설문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답하신 설문지는 보내드린 반송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FAX(574-9183, 573-3698)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附錄 2〉 中小企業을 위한 主要國의 信用保證制度¹⁾

1. 美 國

- 법적 근거 : 1968년에 도입된 Small Business Act의 section 7(A)
- 신용보증기관 :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목적 : 중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에 대부되도록 하는 데 있음.

가. 자격요건

- 대부의 요건 : 다른 방법으로는 적절한 조건의 대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대부의 범위 : 사업의 확장, 설비 및 기계, 운전자금 등 모든 사업목적의 자금.
- 차입자의 요건 :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 자본-부채 비율은 1:1 이하(특별한 경우에는 1:4도 허용됨)이고
 - 신용등급이 우수하여야 하며,
 - 종업원수가 500~1,500명 이하이고
 - 소매업의 경우 취급품목에 따라 연매출액이 350~1,350달러 이하이어야 함.
 - 보증대상 업종은 신문 및 잡지사, 학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보증제한이 없음.

1) Levitsky Jacob and Ranga N. Prasad(1989)의 보고서를 요약·발췌하고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대만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자료로 보완·정리하였음.

- 만기 : 상환기간은 회사의 경영수익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됨. 운전자금은 일반적으로 5~7년까지이나, 시설자금은 최장 25년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함.

나. 위험분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이 15만 5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과 발생이자 합계액의 90%까지, 15만 5천달러를 초과하여 75만달러까지는 최고 85%까지 보전하여 줌.
- 보증한도 : 차입자 1인당 보증총액이 75만달러를 넘지 못함.

다. 보증료

- 보증 수수료 :
 - 대출금의 2%를 중소기업청에 보증료로 납부.
 - 소규모 대출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의 보증료를 받음.
 - 보증료 : 대부자가 부담하나 차입자에게로의 이전이 가능함.
- 이자율 :
 - 통상 보통의 은행대출보다는 높으나 사업자간 금융과 같은 다른 금융수단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임.
 -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약정할 수 있으나, 이자율은 만기가 7년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보다도 0.5~2.25% 이상의 수준으로, 7년 이상인 경우는 2~2.75% 수준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라. 하자청구과정

- 대부자는 분기별로 중소기업청(SBA)에 각 대부의 상태를 보고하고

록 되어 있음.

- 보증된 대부가 만기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는다면, 대부자는 대출잔액 중 보증된 부분과 현재 변제되지 않은 이자를 중소기업청이 구입(purchase)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이 대부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면, 그 이후 그 채무의 관리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맡게 됨.
- 지불되지 않은 대부 중 보증된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손실로 간주됨.

마. 운영 실적

- 중소기업청 보증프로그램은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적이었음.
 - 이는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장기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대출에도 정부가 보증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임.
- 보증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1991년까지의 보증건수는 40만 9천건, 금액으로는 550억 달러의 보증대출이 실행되었음. 이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보증책임은 460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임.
- 1991년 회계기간 동안 총보증공급액은 40억달러이고 보증건수로는 모두 1만 7,326건의 중소기업청 보증대출이 있었음. 이 중 중소기업청 보증책임부분은 약 33억달러 정도임.
 - 중소기업청 보증대출의 20%는 건당 평균보증 대출금액이 19만달러 이하로 주로 창업 또는 신설회사에 지원되었음.
 - 중소기업청 보증을 수혜받고 있는 총 중소기업의 95%는 대출신청 시 기업의 종업원수가 20명 이하였으며, 3명 이하의 지원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30%나 되었음. 보증수혜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업체당 15명 정도임.
- 중소기업청 소액보증대출은 일반 상업대출보다 창업시 또는 기업인수시에 자주 이용되는 반면, 일반 시중은행의 상업대출은 기업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데 자주 사용됨.

바. 평 가

- 긍정적 평가 :

- 중소기업청의 감독절차에 의해 보증대부가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과 대체관계가 되는 것이 방지되었고,
- 중소기업청 보증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체에겐 제공되기 어려운 term loan의 형태로 운영되며,
- 보증비율이 높고, 부실채권에 대한 보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부정적 평가 :

- 높은 부실채권비율(1983년의 경우 4.95%)과 운영비(전체 포트폴리오 잔액의 0.7%) 때문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요구되는 문서가 많고 이를 처리하는 데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 대출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경직적이며, 대부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사. 결 론

- 중소기업청을 운용하는 데 미국은 개도국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신뢰할 만한 신용평가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 대부분의 차입자가 그들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회계 및 기록체계를 갖추고 있고,
- 대부분의 은행이 과거의 경영실적에 비추어 term loan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은행과 이해관계가 맞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음.

- 기타 다른 장점으로는,

- 상대적으로 쉽고 온건한 담보조건과,
- 비용이 적고, 대부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점임.

2. 캐나다

- 법적 근거 : 1961년에 시행된 중소기업대출법(SBLA : Small Business Loan Act)
 - 동법을 적용받는 대출을 경영개선대출(BILs : Business Improve Loans)이라 하며, 4개의 지역협회가 이 업무의 관리, 보고 및 감독 책임을 맡고 있음.
- 목적 : 중소기업에게 중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채권자(lenders in private sector)들을 지원하기 위함. 즉, 중소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중장기대출을 늘리기 위한 것임.

가. 자격요건

- 차입자의 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통신업, 무역업, 서비스업, 건설 및 운수업 분야의 모든 중소기업(금융업, 보험업, 광업, 부동산업, 석유 가스 생산업 등은 제외).
- 대부의 범위 : 창업, 기업확장,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하여만 보증이 이루어짐²⁾.
- 차입자의 요건 : 중소기업 (기존 및 창업기업)

2) 운전자금이나 기존 부채상환용 대출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중소기업대출은 캐나다 연방개발은행(FBDB: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에서 취급하는 직접대출을 이용해야 함.

- 연매출액이 200만캐나다달러 이하인 영리 중소기업
 - 차입자는 프로젝트 총비용의 20% 이상 또는 토지구입이나 공정자산의 건설과 구입에 드는 총비용의 10% 이상을 준비하여야 함.
- 만기 : 보증부대출금의 최대 상환기간은 10년이며, 대출금융기관의 재량으로 원금상환이 분할로 이루어짐.

나. 대부자

- 처음에는 모든 공인은행(chartered bank)이 대부자로 지정되었는데, 후에 신용조합, 신탁, 보험회사 및 금융회사들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됨.
- 이 같은 인가금융기관(approved lenders)은 통상의 상업대출기준 및 관행에 따라 경영개선대출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제고함.

다. 보증료

- 보증수수료 : 캐나다 연방정부는 운영비용과 사고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통하여 同 보증부대출 금액의 1%를 보증료로 받음.
- 이자율 : 중소기업대출법상 변동이자율 적용을 규정
- 이자율은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 1% 이내에서 적용
 - 이자율은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프라임레이트」의 변화에 따라 연동적으로 움직임.

라. 위험분담

- 보증비율 :
- 대출손실금의 85%는 정부에서 보증하고, 나머지 15%는 은행이 손실책임을 짐.

- 대출사고 발생시에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먼저 실행한 후 손실금액의 85%를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해줌.

-보증한도 :

- 캐나다 보증제도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소액대출이 원칙
- 보증금액의 최대한도 : 1980년에 7만 5천캐나다달러에서 10만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됨.
- 캐나다 보증제도의 특징은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액뿐만 아니라 단일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보증에도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지난 3년 동안(1990. 4. 1~1993. 3. 1) 캐나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은 20억캐나다달러 한도 이내이고 보증한도는 「중소기업대출법」이 연장될 때마다 새로이 설정됨.

마. 운영실적

- 보증제도를 운영한 이후 1991년 3월 말까지 캐나다의 인가금융기관은 81억 4천만캐나다달러 규모의 보증부 경영개선대출(BILs)을 하였음.
 - 정부의 대위변제 규모는 1만 3,860건, 700만캐나다달러로서 대출금 대비 총사고율은 3.7%임.
 - 동 기간 동안 보증료수입 3,750만캐나다달러와 구상권 회수금액 950만캐나다달러를 차감하면 정부의 예산상 순수손실은 약 2억 6천만캐나다달러 정도로 추정됨.
- 경영개선대출(BILs)은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1985년 이후 보증대출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1991년의 보증건수는 1만 640건으로 1985년의 1/3 수준임.
 - 이러한 감소 추세는 1985년에 시행된 1%의 보증료 부과와 대출금융기관도 사고 손실의 15%를 부담케 하는 손실공동분담제도의 실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임.
- 1989~91년 동안 보증대출기업의 평균고용인원은 업체당 약 5명 수준임.

- 대출금액의 사용목적은 전체 대출금의 57.7%인 2억 3,800만캐나다달러가 시설기의 구입 및 개선, 시설현대화 등에 사용되었으며, 약 25% 정도는 토지 이외의 공장개체, 확장, 신축 등에 사용되었음.

바. 평 가

- 캐나다의 주요 중소기업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대출법(SBLA)에 의한 보증제도와 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FBDB)에 의한 직접대부제도가 있음.
- FBDB와 SBLA의 효율성에 대한 1981년의 보고서는 “FBDB가 한계기업 또는 신생 기업 등 소형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 반면, SBLA는 기업이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 그러나 1980년의 FBDB의 손실률이 2.10%인 것에 비해, SBLA는 0.58%의 손실률을 보임.

3. 프랑스

- 프랑스의 대부보증제도는 중기대부보증과 장기대부보증의 두 가지가 있음.

A. 중기대부보증제도

- 중기대부인 ‘Article 8’ 대부는 15개의 지역개발기구(SDRs : Societes Development Regionale) 또는 59개 정도의 상호신용기구(OCMs : Organisation de Credit Mutual)에 의해 보증받을 수 있음.
- SDR은 비록 공공적인 법지위나 대부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민간기관임.

- SDR과 OCM모드, 1980년에 설립된 정부기구인 Credit d'Equi-
pement des Petites et Moynue Enterprises(CEPME)의 감독
하에 있음. CEPME는 대부은행에 대하여 2차보증을 제공함.
- Article 8에 의한 대부는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업
도 SDR을 통하여 대부받을 수 있음.

가. 자격요건

- 보증승인은 은행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SDR 또는 OCM의 위원회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CEPME의 최종승인이 필요함. CEPME의 승
인은 대부가 특정한 설비나 고정자산에 사용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임.
- 50만프랑 이하의 대출은 SDR 또는 OCM에서 전권으로 보증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CEPME는 사후적으로 확인을 함.

나. 보증료

- 보증수수료 : 보증시에 차입자에게 보증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부
과하는데, 이는 대부종료시 반환됨. 1년마다 보증잔액에 대해 1.2%의
수수료를 부과함.
- 이자율 : 상업은행 이자율보다 1~2% 낮음.

다. 위험분담

- 이론적으로는 대부의 100%를 보증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SDR이나
OCM에 50%의 counter-guarantee를 지급함.
- 차입자는 가능하다면, 증권이나 개인적인 보증금을 지불하여야만 함.
- 대부금은 필요경비의 70%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기간은 합의된 감
가상각 스케줄에 따라야만 함.

-SDR이나 OCM의 보증한도는 그들 기금에 따라 결정됨.

라. 하자청구과정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은 그들이 counter-guarantee를 제공 하였더라도, 은행이 대부금 전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은 먼저 SDR이나 OCM에 보상을 청구함. 이들의 기금이 고갈되면, CEPME가 은행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짐.

B. 장기대부보증

- 보증기관 : SDRs
- 보증기간 : 5~15년
- 재원 : 공채발행을 통해 마련. 또한 2%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자격요건 : 차입자는 a borrowers mutual guarantee fund에 참여하여야 함.
- 수수료 : 차입자에게 대부금의 3~5%를 부과
- 위험분담 : 전적으로 SDR이 위험을 부담함.
- 평 가 : 인적담보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장기대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의미 있음.

4. 독 일

- 독일은 분권화된 신용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보증기관 : 신용보증회사(KGG:Kreditgarantic-Gemeinschaft)가 주정부별, 주요 부문별(수공업, 상업, 호텔음식업, 조경업 등)로 설립됨. 신용보증회사는 상호부조조직(mutual assistance organization)

으로서 지역 경제공동체³⁾에 의해 세워진 주식회사임.

- 통일 후 동독의 5개 주에 신용보증회사가 설립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24개사임.
- 보증체계의 최상층에는 연방에 의한 보증이 있고, 이 중간에 주정부 특수 금융기관 등에 의한 보증이나 업종별 보증회사에 의한 보증 등이 존재함.

가. 자격요건

-보증대상 :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

-차입자의 요건 :

- 새로운 대부를 포함하였을 경우, 자산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 차입자는 개인 보증이나, 은행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2차 산업 자산을 제공하여야 하며,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기업가의 능력이나 시장분석에 대한 지역경제단체장의 독립적이고 호의적인 평가가 있어야 함.

-보증기간 : 통상 15년까지이고,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23년까지로 되어 있음.

나. 보증료

-보증료 등은 신용보증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평균적으로 보증신청시 취급수수료가 0.5~1.0%이고, 보증잔액에 대한 보증료가 0.5~1.0%임.

3) 출자사는 지역 또는 지역 밖의 은행, 지역의 각종 회의소, 수공업조합, 기타 경기단체임.

다. 위험분담

- 신용보증회사(KGG)의 보증비율은 용자액의 80%이고, 20%는 취급 금융기관이 위험 부담을 함.
 - 80% 중 일정비율을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재보증(손실보상)을 함. 재보증비율은 5년마다 작성되는데 1993~97년까지의 재보증비율은 구서독지역 65%, 구동독지역 80%임.
 - 연방과 州의 부담비율은 60:40이므로 구서독지역에서는 연방정부가 39%, 주정부가 26%를 부담하게 됨.

-보증한도

- 보증 최고 한도액은 연방에 의하여 정해지고 원칙적으로 금리와 비용을 가산하여 1개사당 100만마르크까지로 정해져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한도액을 넘는 보증도 이루어지고 있음. 함부르크의 신용보증회사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300만마르크까지 보증함.

라. 재 원

- 재원은 신용보증회사의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축적된 준비금, 5.5%의 특별이자율로 European Recovery Program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마련됨. 이 차입금은 총 기금의 1/3에서 1/2 이하로 제한됨.
- 보증금액은 그들 기금의 36배로 제한됨.

마. 하자청구과정

- 은행은 신용보증회사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 이 보고에 따라, 은행과 신용보증회사가 협의하여 대출이 부실채권인지를 결정함.
- 차입자가 대부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은행, 신용보증회사 및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이 원상회복의 책임을 짐. 신용보증회사는 원상회복절차가 끝난 후 손실액에 대해 은행에 보상을 함(신용보증회사는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상되는 최종손실을 빠른 시간 안에 보상하며, 증권과 개인자산의 처리에 드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바. 운영실적

- 1992년 말 현재 신용보증회사에 의한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은 6,815건, 41억 800만마르크임.
- 1992년의 손실보전액은 3,320만마르크로 손실률(손실보전에 대한 보증잔액 대비)이 1990년의 1.17%에서 1992년 0.81%로 저하됨.

사. 평 가

- 신용보증회사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관료적이며, 25%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은행은 보증된 대부를 모험산업으로 간주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꺼림.

5. 이탈리아

이탈리아에는 기계부문, 농업부문, 소기업부문을 위한 세 가지 대부보 증제도가 있음.

A. 기계부문

- 정부의 이자율 보조를 받는 Artisan Cassa에 의해 1964년부터 운영됨.

가. 자격요건

- 15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

-보증허가는 Artisan Cassa가 운영하는 지역신용위원회가 맡고 있음.

나. 보증료

-차입자에게 대부금의 0.5%를 한번만 부과함.

다. 위험분담

-대부금액의 70%까지 보증함.

라. 재 원

- 정부가 출연한 자본에 의해 설립된 중앙 보증 기금의 지원을 받음.
- 중앙보증기금은 또한 Artisan Cassa회원들의 기부금과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받음.

마. 하자청구절차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기금은 은행의 손실을 즉시 보상하고 어떤 증권이나 개인적인 subrogation에 대한 권리를 획득함.
-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은 기금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시킴.

B. 소기업부문

- 이탈리아에는 약 80개의 상호조합기금(mutual consortia fund)이 있는데, 이들은 민간기구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한 기금은 약 150개의 회사로 구성되는데, 각 회사당 100만리라의 보증을 하고, 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대부에 대한 보증을 함.

가. 보증료 : 차입자는 조합에 연간 대부금 잔액의 0.5~1.0%의 보증료를 지불함.

- 나. 위험분담 : 보증비율과 보증한도는 각 조합의 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정함. 평균적으로 대부금의 50%의 보증을 제공함.
- 다. 재원 : 재원은 보증료 수입과 조합회원의 분담금에 의해 마련됨.

6. 네덜란드

-보증기관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대부기관:

- 1977년까지는 네덜란드 중앙은행(NMB : Nederlandshe Midde-stand Bank)만이 보증대출을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 그 이후에는 10개 은행으로 확대되었음.

가. 자격요건

-차입자의 요건 :

- 제조업, 공예 및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중소기업은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하이며, 판매액이 750만~1천만길더 이하인 기업임).
- 대부를 포함하여 자본비율이 총순자산의 5~30% 이상이어야 함.

-신규산업에 대한 보증을 위해서는 Dutch small firm agency (CIMK) 또는 the government advisory body(RND)의 추천이 필요함.

-30만길더 이상의 대부에 대한 보증인 경우에는 정부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액 대출의 경우, 정부부처는 대출심사위원회에 비토권을 가진 대표를 파견하고 있음.

나. 보증료

-차입자에게는 보증료가 부과되지 않음.

-이자율은 일반대출에 비해 0.25% 정도 낮은 수준임.

다. 위험분담

- 일반사업대출의 경우 Ministry of Economic Affairs가 100% 보증하며, 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mortgage에 의해 대부금의 47%까지 보증됨.
- 보증은 결함에 대한 보증(deficiency guarantee)의 형식을 취함. 즉, 정부는 증권과 개인보증을 고려하여, 부실채권의 순손실분을 은행에 변제하고, 변제일까지 이자의 손실분을 보상함. 정부가 은행에 변제하는 것을 'declaration'이라고 부름.

라. 재 원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예산에서 충당함.

마. 하자청구과정

- 'declaration'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정부당국은 대부의 기록을 검사하여, 은행이 대부에 따르는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대부 보증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하자청구과정의 문제점
 - 은행은 담보로부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claration 후 5년 이내에 담보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함.
 - 또한 인원의 부족으로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져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7. 포르투갈

- 1974년의 혁명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정책 실시 등 포르투갈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 1975년에는 중앙은행에 의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구 (IAPMEI)를 설립하여 보증기구운용을 실시하였는데, 대부보증은 대부분 단기이며 주로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함.

가. 자격요건

- 단기대부보증대상 : confirmed된 환어음의 선금지원, 원재료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 장기대부보증대상 : 고정운전자금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재조직 운영에 따른 지출

나. 위험분담

- 최대보증한도는 1980년 현재 단기대부의 경우 150만에스쿠도 또는 대부의 50%이고, 장기대부는 500만에스쿠도임.
- 예외적으로 합병, 벤처기업, 부동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상한 확대 가능.

다. 재원

- IAPMEI의 보증기금 제한규모 : 200만에스쿠도(약 6천만달러).

라. 하자청구과정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IAPMEI에게 보증비율에 상당하는

채불된 양의 비율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rescheduling이 재조정되지 않는 한 IAPMEI는 보증지급을 할 것임.

마. 평 가

- 보증기금의 운용 초기에는 IAPMEI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1979년 이후 IAPMEI가 중소기업(SMI)의 자금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및 다른 국제기관으로부터 신용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보증기금의 역할은 다소 약화되었음.
- IAPMEI는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속 기금으로 보증해 주었으나 이러한 보증기금은 1980년 이후 數的·量的으로 제한되었음.
- 하지만 보증기금은 포르투갈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 가운데 중소기업부문의 재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8. 영 국

- 영국의 대부보증제도는 1981년 6월에 도입, 런던 産業局 小企業課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함. 어음교환은행까지 포함하여 1983년 초 현재 30개의 금융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면 은행은 대부신청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내리게 됨.
- 영국의 대부보증제도는 은행자금지원을 받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대부분 수반되는 개별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됨.

가. 자격요건

- 보증승낙결정은 공식적으로 小企業課의 책임하에 이루어짐. 은행에 내놓는 신청은 먼저 대부를 추가한다는 발표가 수반되어야 함. 즉, 좁

은 의미에서 계획 없이 은행이 소기업에게 同 기간의 자금지원을 할 수 없음. 이러한 발표에 따라 가능한 한 대부의 규모 및 기간 등 규정 표준에 맞게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는 자동적으로 승인됨.

- 보증의 최대 한도액은 7만 5천파운드이며, 2~7년 정도의 장기대부는 자산을 담보로 해야 함.

나. 보증료

- 보증을 대신하여 채무자는 보증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함. 이러한 프리미엄은 영국보증기구의 자기자본조달(self-financing)에 의해 3%로 계상되었으나 손실비율이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1985년에는 4%로 인상되었음.
- 이에 따라 보증대부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보증비율도 대부의 80%→70%로 작아짐.

다. 위험분담

- 보증기관이 70%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기관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개별자산이 보증대부에 더하여 당좌대월금보증을 얻는데 담보로 이용됨. 이러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은 30% 수준보다 작아짐.

라. 하자청구과정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이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은행의 지불요구는 14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처리됨.
- 공식적으로 보증이 대부원칙에 들어맞다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의 이자 손실의 4분의 1 비율을 상환받음.

마. 평 가

- 기구가 도입될 당시에는 은행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 1% 수준의 조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3%의 자격비용(GF : guarantee fee)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았음.
 - 3% 수준은 일반적으로 보고서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기관보다 높지만 기구의 총비용을 충당할 목적이라면, 3% 프리미엄은 불합리한 수준은 아님.
 - 보증청구를 승인할 때 다른 기금이나 수입원천이 없고 보증대부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안전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문제는 은행이 GF의 추가적 부담을 보상해 주기 위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은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음.
 - 지속적인 프리미엄 하락은 1986년에 2.5%에 이르렀고 그후 1985년에 4%까지 상승했는데 이것은 4% 프리미엄은 너무 높으므로 기구를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은행은 보증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없이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었다는 비난이 많음.

9. 일 본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약 50여년 전에 설립되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제도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이원적 신용보증제도 :
 - 신용보증협회(CGC : Credit Guarantee Corporation)는 전국에 52개의 협회가 있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보증해 주고,
 - 보증채무의 70~80%를 다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SBICS : Small Business Credit Insurance Corporation)에 재보험하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발전

- 이는 신용도가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다수의 공공법인에 의해 운용하는 것임.
- 약 5%의 보증신청은 신용보증협회에 의해서 거절되고 있음.

가. 자격요건

-대상 :

- 종업원 300명 이하의 제조업,
- 도매업은 종업원 100명 이하, 소매업은 종업원 50명 이하

- 대상업종은 신용보험법에 근거한 지정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농림어업의 일부는 포함되지 않음.
- 보증대상이 되는 자금은 사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설비자금으로 상환가능성이 있어야 함.

나. 보증료

- 기본요율, 제도보증료율, 금액별 보증료율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요율은 연율 1.0%로 신용보증협회가 독자적으로 징수하고 있음. 제도보증료율과 금액별 보증료율은 기본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각 협회별로 정해져 있음.
- 제도보증료율 가운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증제도로 실시되고 있는 당좌대월금보증, 장기경영자금보증, 사업자 카드론 보증의 요율은 0.7~0.9%로 정해져 있음.
- 신용보증협회는 징수한 신용보증료의 일부를 보험공고에 신용보험료로 지불하게 되는데 신용보증료에서 신용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임.

다. 재 원

- 신용보증협회는 지방공공단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담금 및 매년 수지차액 가운데 기금준비금 전입액을 기본재산으로 관리.
- 협의의 자금으로 기본재산 외에 중소기업신용보증협공고와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낮은 금리의 융자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차입금은 보증부용자의 기초가 되는 자금으로 1992년 말 현재 누계로 각각 정부로부터의 도입자금 4,483억엔,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도입자금 약 1조 6,289억엔에 이르고 있음.
- 기본재산의 일정배율로 각 신용보증협회마다 보증의 총액상한이 정해져 있음. 이 배율은 각 신용보증협회의 규모나 재정사정에 의해 약간 다르나 1992년 말 현재 35~60배의 범위에서 운용되고 있고 전국 평균은 51.8배임.
- 제도는 본래 높은 손실비율에 탄력적임. 왜냐하면 신용보증협회의 유동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신용 있는 차입자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임.

라. 위험분담

- 신용보증협회는 은행에 100%의 보증을 제공하고 다시 그들 채무의 70~80%를 신용보증협공고에 재보험함.
- 즉, 신용보증협회가 대위변제액의 20~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80%는 손해보전율이라 하여 중소기업신용보증협공고(SBICS)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따라서 은행의 위험부담이 없음.

다. 하자청구과정

- 상환불능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상환 불능된 원금, 이자 등을 전액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지불함.
- 대위변제가 행해지면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자의 채권자가 되어 이후 그 중소기업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됨.

바. 운영실적

- 1974년까지 매년 수백만의 새로운 대부보증매매가 이루어짐.
 - 그 규모는 1981년 말 현재 7조엔(300억달러)에 이룸.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총대출의 5% 정도임.
- 일본에서 신용보증이 널리 보급된 것은 제도의 분산적인 운영에 기인한 것임.
- 52개의 신용보증협회는 지방정부 및 국영 금융기관의 지방지점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휴(link)하고 있음.
- 1992년 3월 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잔액 약 400조엔 중 보증부대출이 5.5%, 22조엔이고,
- 신용보증협회의 이용자는 전체 중소기업 647만업체 중 160만업체로 1/4 이상이 이용하고 있음.
- 일본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프리미엄 이외에 또다른 수입원을 갖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비용결정에 차이가 있음.
 - 실증분석에 의하면 보증기관에 대한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1987년 정부 시스템의 실제 비용은 보증규모의 2.0%임.
 - 실제손실비율이 1979~81년 동안 급격히 낮아졌음. 그 이유는 subrogation(net of recoveries from borrowers)에서 payment의 절대적 가치가 총 미상환채무(obligations outstanding)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10. 대 만

- 대만의 신용보증제도는 行政院 行政命令에 의거하여 1978년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BCGF : Small and Medium Business Credit Guarantee Fund) 설립.
- 목적 : 중소기업자에 대한 興信供與에 있어서 公的 保證人이 됨으로써 금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

가. 자격요건

- 차입자의 요건 :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납입자본금이 6천만 NT달러 이하로서 총자산이 1억 8천만 NT달러 이하인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설립 후 최소 6개월,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소 1년 이상이 된 기업. 즉, 신설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음.
 -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대만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보증의 종류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설립초기에는 제조업에 제공하는 일반대출 보증뿐이었으나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보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보증이 개발되었음.
 - 현재에는 일반대출보증, 상업어음보증의 보증, 수출금융에 대한 보증, 생산재구매 자금보증, 정책자금 대출보증, 소기업 자금대출보증, 관세납부보증의 보증, 계약이행 보증의 보증, 자기상표 국제화 증진사업 대출보증, 청년창업자금 대출보증 등 11가지 종류의 보증을 취급하고 있음.

나. 위험분담

-보증비율 : 부분보증제도를 운영

- 회수불능한 채권 중 사전약정에 의한 비율(80~90%)만큼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부담함.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변제비율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보증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음.

-보증한도 :

- 기업당 보증한도는 100만 NT달러.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의 종류별로 은행의 신용공여 최고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사전심사나 승인 없이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한도초과시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계열기업군의 경우에는 계열기업 상호간 자금흐름이 전체 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그 중 1개 기업만이 자동승인한도 내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타 기업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이 자동승인한도 이내의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종류에 따라 상이함. 관세보증은 연 0.25%, 이행보증은 연 0.5%이며, 그 외의 보증은 연 0.75%의 보증료를 징수함.

라. 하자청구과정

-신용보증으로 대출받은 기업이 만기 후 5개월이 경과하여도 상환을 못

하고 이미 영업을 정지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기업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법에 따라 소송하여 채무명의를 얻음. 그 후 기금이 신청하여 보증부분의 원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법정비용 등을 받아 대위변제를 실시하는데 대위회수변제 후 회수가 되었을 때는 당초 보증비율에 준하여 회수금액의 일정분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 대위변제 후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위변제금액을 일정기간 가수금계정에 예치토록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절차 완료 후 더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예치된 가수금으로 관련대출금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음.

마. 운영실적

- 신용보증잔액은 1991년 말 현재 862억 9,400만NT달러로 전년말 대비 4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보증규모는 1980년 이후 10여년간 9.8배로 커짐.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승인한도 내의 보증이 총보증액의 84%,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이 14%이며, 나머지 2%는 기업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직접보증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에 재추천됨으로써 보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남.
- 대위변제의 선행이 되는 보증사고율이 최근 5년간 평균 3.77%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금의 보증채무가 이행되는 대위변제율은 1.2%에 그쳐 보증사고가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임.
 - 이는 부분신용제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사고 발생 이후 사고정상화 및 채권회수에 적극적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1. 인 도

가. 연 혁

- 1960년에 22개주에 대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함(1963년에 전국으로 확대).
-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에 의해 운영되던 제도는 후에 탄력적으로 변화됨. 결국 모든 신용보증제도는 조정과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the Deposit Insurance and Credit Guarantee Corporation(CGC)에 의해 운영되게 됨.
- 1981년에 이 회사는 전에 운영되던 보증제도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됨. 1981년 4월 1일에 독자적인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함.

나. 자격요건

- 소규모기업과 제조업, 가공업, 서비스업에 고용된 소규모 보조단위 (small scale ancillary unit)의 투자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을 함.
- 소규모기업의 정의 : 고정자산 350만루피
- 소규모보조단위의 정의 : 고정자산 450만루피

다. 참여기관

-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며, 회사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만 보증이 주어짐.
- 일단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된 차입자에 대한 모든 신용에 대한 보증을 함.

라. 보증료

- 총신용보증잔액이 2만 5천루피 이하이면 연 0.5%, 2만 5천루피 초과 시에는 연 0.75%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함. 보증료를 반년 앞당겨 지불할 수도 있음.

마. 위험분담

- 보증비율 : 보증잔액이 20만루피 이하이면 불이행금액의 60% 보증, 20만루피 초과시에는 불이행금액의 50% 보증(후진 소규모산업의 경우에는 60%).
- 보증한도 : 채무자 1인당 최대한도는 100만루피.

바. 자금조달

- 5억루피의 납입자본금 --> government securities에 투자
- Share capital --> general fund에 투자
- 운영자금은 general fund로부터의 이익금과 보증료로 충당

사. 손해배상청구절차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증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음.
- 손해보상이 지급되는 조건은
 - 보증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날보다 1개월 이후에도 상환되지 않고
 - 대출이 금융기관에 의해 부실채권(doubtful debt)으로 취급되고, 금융기관의 계정상 그렇게 취급된 경우, 이 경우 금융기관은 이 손

실이 승인 및 감독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아. 평 가

- IDBI (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로부터 재할인 (refinancing)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대출을 하여야만 하므로, 과연 이 제도가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주된 불만은 손해배상청구의 승낙과 청산에 관한 것임. 원래는 한달의 처리기간 안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2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사이에 보증계약상 해석의 차이도 존재함.
 - 은행이 신용을 제공한 회사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가?
 - 연체된 이자가 불이행채권에 포함되는가?
 - 은행측에 대부의 승인, 감독 등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모든 대부에 대해 모든 조건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법의 정신에 따라 조문을 해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협회의 신용과 보증제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는 이러한 불만을 의식하여 청산절차를 바꾸었으나,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임.
- 다른 문제로는 보증은 100만루피 이하의 대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나, 보증료는 전체 대부잔액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점이 있음.
 - 금융기관은 이 제도가 보증되는 부분에 비하여 보증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

- 신용보증협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차입자에게 보증료를 올리지 않고, 자립적인 보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당화.

12. 말레이시아

- 1972년에 Bank Negara Malaysia에 의해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Berhad(CGC)가 설립됨.
- 이 기구의 목적은 상업은행이 소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
- 이 기관은 Bank Negara와 말레이시아의 모든 상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납입 자본금 250만링기트로 설립됨.
-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Berhad(CGC)는 두 형태의 보증제도를 가지고 있음.
 - CGC General Scheme (CGC /GS) : 1973년 1월에 시작
 - CGC Special Loan Scheme (CGC /SLS) : 1981년 1월에 시작

A. CGC General Scheme

가. 자격요건

- 납입자본금과 준비금이 10만링기트 이하인 회사.
- 말레이시아 국민에 의해 등록 · 운영되고 소유된 회사.

나. 보증료

-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간 0.5%
- 이자율은 기본 대부이자율보다 1% 낮게 설정

다. 위험부담

- 대부잔액의 60%를 보증

B. CGC Special Loan Scheme

가. 자격요건

- 순자산 25만링기트 이하의 등록된 회사
적격주식기금(eligible shareholders' fund)이 25만링기트 이하인
주식회사
- 대출상한은 두 경우 모두 25만링기트
각 대출자당 대출한도는 5만링기트
- 고정자산 투자 이외의 대출은 담보 없이도 제공 가능. 실제로는 대부
분의 은행이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 이자율 : CGC/GS가 연 8.5%인 데 비해 CGC/SLS는 年 7.5%

13. 필리핀

가. 연 혁

- 담당기관 : 1952년에 USAID의 역할을 이어 받아 설립된 Industrial
Guarantee and Loan Fund(IGLF).
- 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부를 재금융(refinancing)함으
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금융기관
에게 대부기금을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의 일부를 보증
하기도 함.
- 정책적 문제에 대해 IGLF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Interagency Re-
view Committee(RC)의 구성과 역할을 변경함. 1975년 세계은행이
참여함.
 - 이전에는 재할인되거나 보증되는 모든 대부가 RC에 의해 조사되고
승인되어야 하였음. 그러나 세계은행의 충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

한 RC accreditation 제도가 개발되었음. 일단 accreditation을 받은 후에는 IGLF의 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의 어떠한 대부도 자동적으로 60%까지 재할인되고 보증됨.

- 그러므로 1976년 이후에 accreditation을 받은 금융기관은 제출된 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모든 책임을 맡게 됨. 이에 따라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몇일로 줄어듦.
- RC는 초기에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NEDA), the Central Bank(CB),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stitute of small scale Industries(UP-ISSI), Ministry of Industry(MOI)로 구성되어 있었음. 1978년에 확대 개편되어 Ministry of Finance(MOF)를 포함하여, 정책을 기초하고 실행하는 데 더 많은 영향력을 갖도록 대표성이 강화됨.
- IGLF 프로그램은 중앙은행의 Department of Loans and Credit (DLC)에서 운영함.
 - 이 부서는 accreditation을 받을 금융기관을 분류하고 평가하며, 그들의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나. 자격요건

-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가내 중소기업
- 가내기업은 자산 25만페소 미만
 - 소기업은 자산 25만페소 이상 250만페소 미만
 - 중기업은 자산 250만페소 이상 1천만페소 미만

다. 참여기관

- IGL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으로부터 accreditation을 받아야 함.

- accreditation의 요건

- minimum net equity
 - a loan portfolio with arrears below a given level
 - 대부를 승인하고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데 충분한 인력
- 1985년에 34개 금융기관이 accreditation을 받음. 이 중 상업은행 18개, 비통화금융기관 7개, savings/mortgage bank 2개, private development bank(PDB) 7개임.

라. 보증료

- 대부잔액 중 보증된 부분의 2%
- collateral-short guarantee의 경우 차입자가 부담.
- credit-risk guarantee의 경우 대부금융기관이 부담.

마. 위험분담

- collateral-short guarantee는 초대부금액의 25%까지 담보부족을 보호함.
- credit-risk guarantee의 경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40%까지 보 증함. 실제로 collateral-short guarantee는 1982년까지는 이용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음.
- 1982년중 IGLF를 이용한 총대부는 18억 8,300만페소에 이룸. 이 중 약 26%는 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약 62%는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됨. 비통화금융기관 중 PDCP와 MANPHIL이 IGLF 총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함. 상업은행의 IGLF대부는 1984년 말경 약 5억 3천만페소에 이룸.
- 1983년 초에 일부 개인개발은행이 IGLF로부터 탈락하고, IGLF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SMI에게 직접 대부를 하는 DBP(Develop-

ment Bank of the Philippines)와 계약을 맺고 SMI에 대출을 하기 시작함.

14. 태 국

가. 연 혁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술적 지원에 따라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of Thailand가 1985년에 the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Fund(SICGF)를 설립.

· SICGF는 태국정부가 출자한 2억바트의 자본금으로 설립.

-설립 5년간의 성과를 지켜본 후, 성공적일 경우 SICGF는 독립적인 법률기관이 될 예정임.

-SICGF의 지침은 1986년 5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됨. 이 지침에 의하면 SICGF(the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Fund)는 은행의 credit screening procedure에 따라 대출승인 업무를 맡게 됨.

-일반적으로 담보부족의 80%를 보증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100%를 보증함. 대출승인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SICGF(the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Fund)는 은행이 추산한 담보액을 받아들임. 유일한 조건은 프로젝트 수행중 취득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넣어야 한다는 것임.

나. 보증료 :

-연간 1.5%

다. 자격요건

-총순고정자산 1천만바트 이하의 회사.

- 대부액은 2천바트에서 5백만바트 사이의 금액.
- 고정자산과 운전자본에 대해 대부해 줌.

라. 운영실적

- SICGF(the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Fund)는 당초 은행이 저당에 대한 모든 담보권을 행사한 후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함.
- 지금은 차입자에 대한 결심공판이 끝난 후에 손해배상을 함.
- 만약 자산을 현금화하였을 경우 은행이 보증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얻었을 경우, 이 부분은 비례적으로 은행과 SICGF가 나누게 됨.
- 초기에는 운영실적이 미미한 형편임.
- SICGF는 소규모기업에 대한 대부에는 100%까지 보증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총대출잔액은 그의 총자산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증료와 자산을 투자하여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함.

15. 콜롬비아

가. 연 혁

- 담당기관 : Fondo Nacional de Garantia(FNG)
 - Instituto de Fomento Industrial(IFI)과 Corporation Financiera Popular(CFP)에 의해 1981년 설립되었고 운영은 1983년 1월부터 시작됨.
 - 뒤에 PROEXPRO(the Export Promotion Organization), CARBOCOL(a national mining corporation), 그리고 ACOPI(Association of Colombian Small Industries)가 참여.

-납입자본금 1억페소.

나. 자격요건

-차입자 요건 :

- 자산 1억페소 이하
- 종업원 150명 이하
- 총판매액 1억 5천만페소 이하인 기업

-대부범위 : 건설, 장비의 구입 및 시설, 운전자산에 대한 대부

다. 보증료 :

-대부의 보증된 부분에 대하여 年 2%

라. 위험분담

-보증비율 : 대부의 80%를 보증

- 1986년 이후 일부종목에 대해 100%까지 보증

-보증한도 : 최대 대부액 600만페소, 최소 대부액 10만페소.

마. 손해배상절차

-담보와 자산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손해를 보전한 후에 FNG가 보증 부분을 배상함.

-30일 안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대위변제시 10만~50만페소 규모의 대출은 즉시 전액 보전하여 주고, 대출액 50만페소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즉시 보전하여 주고 나머지 50%는 90일 안에 보전하여 줌.

16. 자마이카

- 1982년까지는 Bank of Jamaica(BOJ)의 보조기구로 운영되던 Premier Investment Corporation(PIC)이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였음. 1981년의 정변 이후, PIC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할 National Development Bank(NDB)를 설립하였음.
- 구제도에 의하면, PIC(Premier Investment Corporation)는 대부분의 50%까지를 보증하고, 2%의 보증료를 받음. 대부 한 건당 최대한도는 초기에 20만달러 뒤에 50만달러로 확대됨.
- 시중 5대 은행이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운영성과는 매우 미미함. 이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중앙은행은 이미 Export Development Fund에서만 약 4천만달러의 손해배상 미지급금을 가지고 있었음.
- 또 체납대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므로 은행은 보증대부를 기피함.

17. USAID의 보증제도

가. 연 혁

- UN의 소기업보증프로그램인 Productive Credit Guarantee Program(PCGP)은 1974년 개정된 1961년의 US 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해 1975년 시작됨.
- USAID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4개국을 지원하기 위한 1,200만달러가 마련됨.
 - 파라과이 : 350만달러
 - 코스타리카 : 300만달러
 - 니카라과 : 300만달러

· 볼리비아 : 250만달러

- 1983년에 PCGP에 의한 모든 보증제도는 USAID와 각국 정부간의 의견불일치에 의해 중지되었음.
- PCGP에 의한 총보증액은 2,300만달러였고, USAID는 손해배상을 위해 10만달러를 지불하였음.

나. 자격요건

-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체.
- 대부는 5만달러 이하(개인소유기업의 경우에는 2만 5천달러로 제한됨).

다. 보증료

- 대부액의 5%(보증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총대부를 기준으로 함).
- 이 프로그램은 5%의 보증료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국 중앙은행이 초기에 출자한 운영자원으로 운영하도록 고안되었음.
- 요원에 대한 훈련, 매뉴얼(manual), 운영에 대한 자문은 USAID가 지원함.

라. 위험분담

- 각 대출에 대하여 75%를 보증함(USAID 50%, 은행 전체 25%). 나머지 25%는 개별은행 부담.

마. 손해배상청구절차

- 채무불이행 기간 180일이 지나면, 30일 안에 PCGP가 대부의 보증된 부분을 지불함.

바. 운영실적

- 세 프로그램(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볼리비아)을 통해 1978~80년 기간 동안 총대부는 1,600만달러에 이룸. 상환기간은 평균 5년이었음.
- 코스타리카
 - 1979년 1월에 PCGD 시작.
 - 당초 600만달러 정도의 대부를 보증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 AID의 지원은 300만달러였음.
 - 한 해의 운영을 통해 이 지원제도에 참여한 4개 은행 중 3개 은행의 성과는 성공적이었음. 그러나 총보증액의 59%를 차지한 네 번째 은행은 1991년에 19%의 부실대출을 안게 되어, 부실채권 초과로 이 제도에서 탈락하게 됨.
 - 이 보증제도는 1982년 중단됨.
- 파라과이
 - 파라과이에서는 원래의 예상을 넘는 급속한 성장을 보임. 처음 15개월간 534건, 990만달러의 대부보증을 함.
 - 1981년에 대부자원의 부족으로 대부가 중단됨. 이때까지 총보증액은 1,750만달러임.
- 볼리비아
 - 소규모 농업에 대한 약간의 대부가 있었을 뿐, 운영실적은 미미함.
 - 1983년에 중단됨.
- PCGP는 1982년 이후 활동을 중단하였지만, USAID의 다른 부서인 the Bureau of Private Enterprise가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부보증 업무를 시작함.